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 연구진 | 박신규 · 이동기 · 조아영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 [박신규, 이
동기, 조아영 지음].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3
p. ; cm. -- (전발연 ; 2013-PR-03) (Jthink ;
2013-PR-03)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079-6 93330 : 비매품

다문화 가족[多文化家族]
전라북도[全羅北道]

332.276-KDC5
306.845-DCC21

CIP2013027538

연구진

연구책임 박신규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진 이동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조아영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자문위원 김이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경 · 전북이주여성 센터장

정경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센터장

김문강 · 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현선 · 전라북도 다문화교류과 다문화자녀교육

연구관리 코드 : 13JU0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혀가면서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발생하고 부부간의 연령 차이로 인한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가 사망으로 연결되면서 해체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00년 전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1,495건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음. 사별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 간의 연령 차이는 2011년 기준 9.5세로 한국인 간 혼인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연령차가 2.2세인 것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족 부부의 연령차는 큰 것으로 나타남. 부부간의 연령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해체 과정을 거친 가족이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부간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는 심각할 수밖에 없음.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망도 결여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의 문제 등 생활 전반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
-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예산 지원이나 추진체계 수립 등으로 다문화가족 일반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진행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해체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는 국제결혼 중개관리와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의 인

권보호에 집중되어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2011년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전체 혼인건수 10,458건 중 다문화 혼인 건수가 1,129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구성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와 함께 2011년 전북지역 다문화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13.1%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2.6%의 이혼율보다 높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권에서 전남 다음으로 높음. 한편 부부간의 평균 연령 차이가 다문화 혼인의 평균 9.5세보다 높은 11.4세를 보여 배우자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가족의 해체 현상도 예측할 수 있음.
- 전북 지역의 다문화가족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체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여 이혼, 사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결혼을 주요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족의 해체에 따른 체류 문제, 자녀양육 및 생활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로 여겨짐.

□ 연구목적

- 전북 지역의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를 분석하고 이혼, 사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실태와 사례조사를 통해 조명하고자 함
- 실태와 사례조사의 분석과정을 통해 현재 해체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대응책을 연동시켜 그 한계점과 발전적 정책방안을 제안함
- 정책적 추진방안의 제안을 통해 해체위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적 추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 형성과 해체 관련 논문 및 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 관련 통계 자료 분석
-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시군 관련 행정 자료 수집 및 검토

○ 원자료 재분석

-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조사내용 중 전북지역의 이혼, 사별한 결혼 이민자의 생활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유배우자인 결혼이민자와 비교 분석함.
- 전북지역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이혼 추이 파악을 위해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 분석

○ 사례 조사

- 조사대상 : 전북지역 국제결혼의 97%를 차지하는 여성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이혼, 사별과 관련하여 변화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심층면접 대상자는 20사례 선정함
- 조사방법 : 심층면접으로 면담은 개별면담으로 개인적 이야기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면담자의 자택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이루어졌고 대상자별로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음.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전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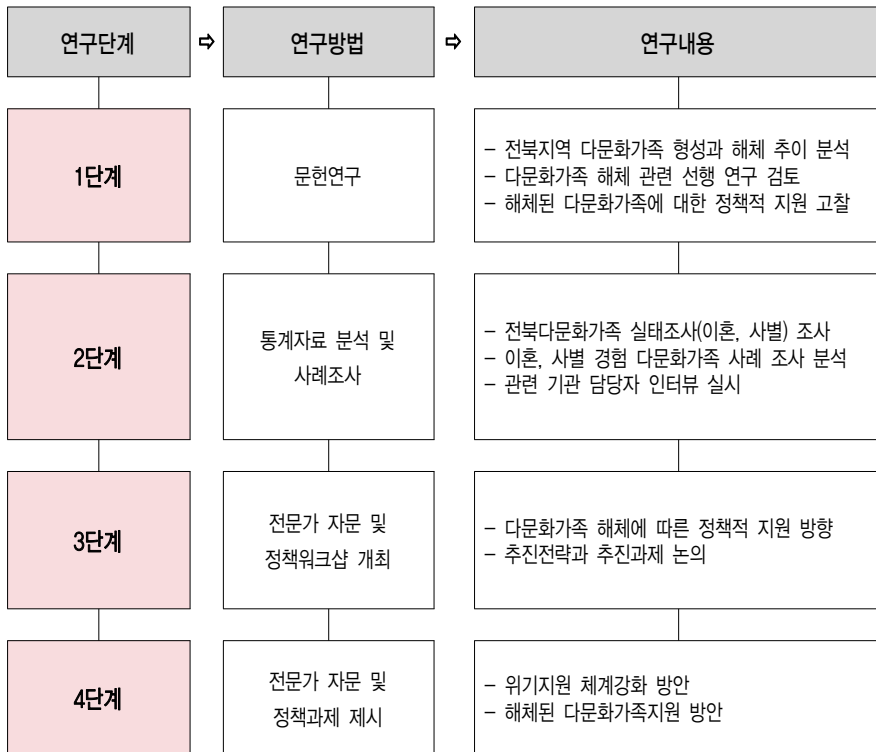
- 이혼·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한 조사항목

대상	항목	주요내용
이혼·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반적 인적 사항	인적사항, 체류자격, 이주목적 등
	결혼과정	한국인과의 결혼이유, 결혼과정, 절차
	이혼·사별 과정	이혼 및 사별 이전의 가정생활 이혼과정, 이혼 이후의 생활/사별의 이유, 사별 이후의 생활
	양육 및 교육서비스 지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가족 내의 교육지원 지원받는 지역 교육서비스 현황
	사회적 관계	한국인 및 모국인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기관 등의 지원
	정책지원	정부의 현재 지원방식, 지원요구 사항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진행을 위해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함. 1차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연구 참여자 선정을 의뢰하였고, 2차 자문회의에서는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 방향과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연구절차



II. 연구결과

1.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해체 실태

-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전북지역 원자료를 가지고 다문화가족 유형별로 분리하여 일반다문화가족과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비교 정리함. 2012년의 표본조사로 실시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 해체와 관련된 항목들을 정리하여 시기별 다문화가족의 변화 구성을 비교함
- 우선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 이혼 사별한 가족은 40대 연령층이 34.9%, 30대가 31%, 20대가 21.7%의 분포를 보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 65%, 중학교 이하가 33.2%로 나타남. 체류기간별 혼인상태를 보면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이혼의 경우 5-10년 미만 37.1%, 사별은 10년 이상이 40%로 나타남. 이혼, 사별한 결혼이민자들은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62.5%에 해당되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주거 및 경제생활을 분석해 보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49.2%가 전세 또는 월세로 일반 다문화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주거 소유 형태를 지님. 월평균 가구 소득 분포를 보면 이혼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79.5%, 50만원 미만이 24.4%를 나타냈으며, 사별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41%로 나타남. 현재 취업비율을 보면 취업여부에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있어서는 이혼의 경우가 52.9%, 사별의 경우 56.1%로 나타나 일반다문화가족 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취업비율에 있어서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음. 그러나 앞서 본 가구소득 분포에서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아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을 받는 직종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은 더 낮은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하게 함.
- 해체 사유 및 생활의 어려움을 분석해 보면 우선 이혼 사유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이혼사유는 2009년의 경우 성격차이 29.4%가 2012년에는 성격차이 48.1%로 일반 가족들과 유사한 이유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음.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2009년 당시 이혼의 사유가 성격차이가 21.4%에 머무르고 경제적 무능력 21.1%, 학대와 폭력이 17.7%로 나타나 전국 단위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혼 사유를 동일시 할 수 없는 비율을 보이고 있음.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외로움, 언어문제, 자녀양육의 순이었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 사별로 인한 배우자의 부재는 당장 생활의 곤란함과 함께 남편이나 시댁 식구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이(김이선 외, 2011) 이들에게 외로움은 또 다른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받는 지원 서비스의 경험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0%였고, 가족상담 및 교육경험을 받지 못한 경우가 70.4%에 이르렀고 자녀양육 및 학습 관련 도움에 있어서도 62.7%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이와 같은 지원서비스의 경험 부재는 향후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는 작업이 지원센터의 역할로써 중요함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겠음.
-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보았을 때 해체다문화가족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64.4%에 이르러 다른 사회보험들 보다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나 일반 다문화가족의 건강보험 비율이 82.7%에 이른 것 보다는 낮은 가입률을 보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가입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해체된 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부양자로서 취업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됨.
-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 27.3%였고 의료보호는 20.9%의 혜택을 받고 있음. 현재 해체 다문화가족의 공공부조 수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수혜율은 11.7~27.7%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북의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기본적인 범주 안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2.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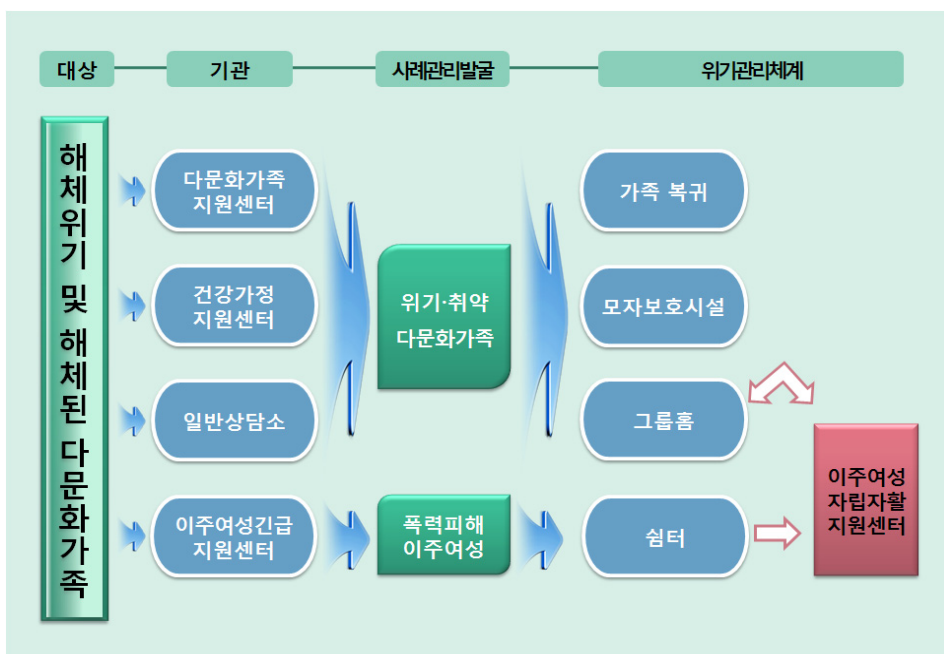
- 이혼, 사별 등으로 해체를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인터뷰 방법을 통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과정은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없는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내적·외적 조건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조사대상은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찾아보았고 다음으로 해체위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이주여성쉼터를 통해 대상자를 소개받았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체 20개의 사례조사를 실시함
- 사례조사를 통해 나타난 생활실태는 먼저 결혼의 과정을 보면 국제결혼이 진행되는 메카니즘 하에서 결혼에 대한 개인적 욕구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환상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중개업과 지인, 통일교 등의 경로를 통해 들어오면서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국제결혼 과정에 들어오게 됨.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의 초기부터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음.
-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들은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이 64.4%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해당됨. 여성결혼이민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과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혼하거나 현재 이혼소송중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를 보면 결혼생활의 위기를 맞으면서 가출, 쉼터 입소, 다시 가족 복귀, 또다시 재가출하거나 쉼터를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음.
- 전라북도의 경우 평균 결혼 연령의 차가 11.4세로 다른 지역보다 연령차가 많아서 배우자의 사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 본 연구의 사별 사례들도 질병과 사고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사례들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시택 식구들의 생각은 가족(한국인 남편)의 배우자라기보다는 일꾼이나 보모 등으로 간주

하는 경향이 다수 존재하기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은 시댁에서 결혼이민자 자신의 위치를 자리잡을 수 없게 하고 있었음. 남편을 통해 형성되었던 관계망이 급격히 쇠퇴해지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도 흔들리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고립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됨. 지역사회와 가족의 기본 축인 남편의 부재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녀양육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가족관계의 끈도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함

3.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 쟁점

- 현재 지역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은 주거 공간이었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였음. 앞서 실태조사에 나온 바와 같이 배우자가 있던 경우에도 경제적 취약 계층이었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한국의 한부모가족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됨. 특히 원가족의 지지가 거의 없는 한국이기에 이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이혼 및 사별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관한 지원정책은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이 핵심 사안임. 특히 실태나 생활실태조사에도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자녀양육, 주거 공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무엇보다 이것을 해결하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자녀양육을 돕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지원해 주는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이를 위해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브릿지 센터의 역할을 하는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와 자립기반 확보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언어문제, 취업능력의 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주고 자녀양육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한편 현재 지역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들은 지역사회의 위기 상태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가 정비되는 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해체위기를 맞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해체 위기를 극복하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함. 이와 같은 해결은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위기 관리 체계들의 정비가 필요함



〈그림 1〉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 위기관리 체계

Ⅲ.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1.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 방안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음. 그러나 현재의 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거주기간의 장기화, 다문화가족의 해체 현상, 다문화가족 지원의 대상별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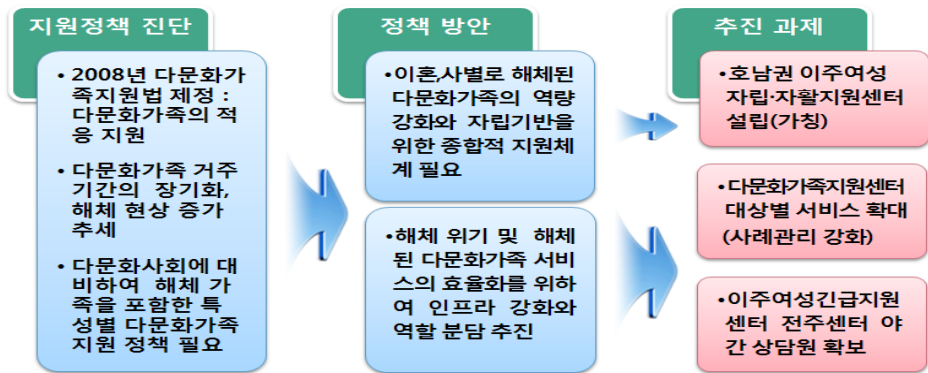
○ 첫 번째로 한부모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배우자 부재로 인한 취약위기 가족으로 전락 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

해체 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배우자를 통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서 이들이 지닌 인적·사회적 자원과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지역사회에 취약 위기 계층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음. 해체 다문화가족이 가족으로서 자녀돌봄과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두 번째로 이혼·사별 등 해체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기존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과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존 인프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센터, 이주여성 그룹홈 등으로 이와 같은 기존 인프라를 통해 해체위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각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1) 사회적 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의미한다.



〈그림 2〉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방안 및 과제

2. 정책 추진과제

1) (가칭) 호남권 이주여성자립자활지원센터 설립방안

(1)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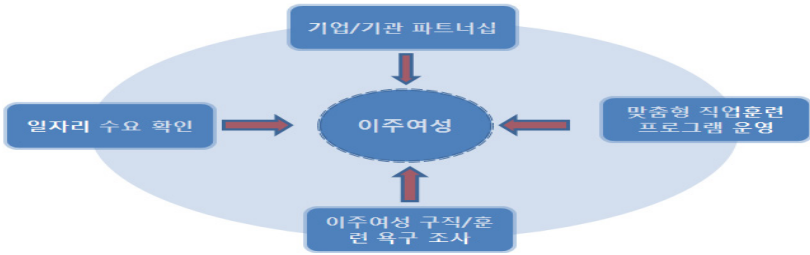
- 다문화 이혼 구성비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북과 전남 지역 이주여성 이혼율이 단순 합계치가 전국대비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를 포함할 경우 호남지역의 이주여성 이혼율은 36.5%로 나타나 해체된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임
- 다문화 가족 해체가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음. 전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 현황에서 이혼상담의 경우 부부갈등이 3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이 28.3%로 나타남. 특히 갈등이 폭력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 해체가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임
- 부부갈등 및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이주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쉼터는 호남 지역에 4개소가 있음. 쉼터는 일시 보호시설로 최대 2년 이상을 거주할 수 없고, 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바로 퇴소하게 되어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

으로서 사회적 역할 및 자립 기능을 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 노출됨.

- 부부 갈등과 폭력을 피해 원 가족으로부터 나온 이주여성의 심리적·정신적 치유와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치인 자립·자활지원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 호남지역의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자활지원센터를 전라북도에 건립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호남권역에서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기존 인프라 구성도가 높고, 행정지원체계에서 다른 시도와 달리 광역 단위에서 다문화교류과를 두어 다문화 관련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지역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모델 개발과 함께 지역적으로 U-turn 기업유치를 통해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주여성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타 지역 사례로 서울이주여성 디딤터가 운영되고 있음. 2010년에 설립되어 설립 비용 19억, 운영비 8억 (국비: 지방비 비율이 5:5)이 지원되고 있음. 자립자활센터의 기능은 이주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및 취창업을 알선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음
-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현재 자립자활기관 입소 대상과 운영프로그램에서 기존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과의 차별성, 운영 주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향후 광역단위로 생기는 자립자활지원센터의 모형은 지역밀착적이며 이주여성의 자립자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이 요구됨

(2) 호남권 이주여성 자립·자활센터 운영방안

- 우선 **운영방향**은 호남권역의 자립·자활센터가 지역의 이주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춤형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더불어 가족 친화적 생활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와의 물적·인적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 이주여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틀

- **운영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동반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사회적 및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터뷰과정 이전에 공동작업장의 운영을 통해 사전적 취업 활동을 시작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운영안도 마련함.
- **운영 주체의 유형**은 직영 형태와 민간위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영형태와 민간 위탁형태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의 표와 같음. 광역의 장점을 잘 살릴수 있는 운영 주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표 1〉 호남권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의 운영주체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비고
지자체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안정화 및 지속화에 기여 • 성과도출 가능 •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법을 적용 운영에 효율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이주여성에 대한 심리적 이해 및 공감 부족 • 이주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마인드 접근 부족 및 경영의 지속성 부족 	
민간위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이주여성의 이해 및 자활의지 형성에 긍정적 • 이주여성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취·창업 연계네트워크 구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지원체계가 떨어져짐 • 설립주체와 운영관리에 있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 형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해체위기 및 해체된 가족의 서비스 지원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12개가 감소되었음.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분석해 보면 다문화가족 초기생활 적응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①초기입국자 대상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②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③상담, 다문화가족사례관리 ④방문교육, 자조모임 ⑤취업소양교육, 취업연계사후관리 ⑤자녀성장지원, 정보제공 ⑥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의 해체위기에 대한 예방 사업으로 국제결혼전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상황임.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변화 내용에 맞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해체위기 및 한부모 결혼이민자가족 등을 위한 서비스로 확대해야 할 것 임

(2) 정책개선 과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역할 강화

- 해체위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역할을 강화하는 것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업무를 맡은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센터라도 센터별 상황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상담공간의 배치도 센터마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역할과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업무의 독립성과 업무분장을 센터장의 역할로 실현되도록 하며 지원센터 마다 상담실의 공간 마련이 필요함.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함께 현재 국비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의 시범운영(전국 단위의 50명)이 2014년에 100명으로 확대되는 계획 하에 전라북도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개선

- 전라북도 차원에서 201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마을학당은 전북형 사례 관리의 모형으로 해체되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지원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음. 다문화마을학당은 각 지역별로 이혼, 사별 이후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의 사회취약계층이 자립·자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전북형 사례관리의 모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안과 운영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피해, 가족 간의 갈등해결,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등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지원체계가 요구되면서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함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Hot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위기개입 상담(내방, 출장, 전화상담), 긴급구호서비스, 법률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통번역서비스 등 다각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6개가 위치해 있으며 13개 언어 85명의 상담원을 배치해 둠. 그러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에 비하여 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중앙단위에서 이와 유사한 상담콜센터인 다누리 콜센터와의 업무 중복성과 지역센터의 야간상담이 중앙센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임

(2) 정책개선 과제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전주센터의 야간상담원 배치

- 현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24시간 Hotline 콜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역 센터의 경우 야간상담은 중앙센터로 연결되고 있기에 가정폭력이나 다문화가족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지역별 이용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있어서 부산, 전북의 순으로 기존 지역센터가 있는 곳의 비율이 높음

(표 2) 중앙과 지역센터의 이용비율(2012)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제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본국	기타
비율 (%)	100.0	13.8	18.6	3.5	1.6	2.3	4.7	4.9	0.7	3.3	7.2	5.2	1.5	8.4	8.3	5.2	4.2	1.1	5.5

- 시간대별 상담특징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담이 증가하였으며 야간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야간상담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69.4% 증가함

(표 3) 시간대별 상담 통계(2012)

구분	계	08:00~12:00	12:00~18:00	18:00~22:00	22:00~24:00	24:00~08:00
건	66,890	19,701	30,733	10,174	3,392	2,890
비율(%)	100.0	29.45	45.95	15.21	5.07	4.32

- 지역센터의 경우 야간 상담은 중앙으로 연결되어 6시 이후 수행하는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직접 상담에 집중되어 있고, 위기 가족의 문제가 당면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함. 따라서 현재의 지역 센터 인원을 보강하여 야간 상담원을 배치하는 안도 필요한 것임
- 야간상담원의 배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지역별 이용 현황에서 지역적으로 이용비율이 높은 곳인 부산, 전북, 전남 지역을 시범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한편 야간상담원의 배치는 운영비의 확대도 정리될 수 있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전북 지역센터는 전체 운영비가 여성가족부가 중앙의 국비로 지원해 주는 1억5천2백만원과 도비 지원금 2천5백만원으로 인건비는 중앙의 국비로 운영되기에 야간상담원 배치는 국비의 지원금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임.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배경 및 내용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6
1. 연구방법	6
2. 연구절차	8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1. 선행 연구검토	9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12
제 2 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대응정책 분석	17
제 1 절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17
1. 전국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17
1) 전국 다문화가족 형성 추이	17
2) 전국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	22
2. 전북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27
1) 전북 다문화가족 형성 추이	27
2) 전북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	32
제 2 절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응정책 분석	36
1. 중앙정부의 대응정책	36
2. 전라북도의 대응정책	39

제 3 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45
제 1 절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해체 실태	45
1. 조사자료 개요	45
2. 전북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46
1) 일반적 특성	46
2) 주거 및 경제생활	50
3) 해체 사유 및 생활의 어려움	53
4)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경험 및 공공부조의 혜택	56
제 2 절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59
1. 사례조사	59
2.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64
1) 결혼 과정: 결혼의 환상, 잘못된 정보	64
2)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 그리고 이혼 과정	66
3) 닥친 불행 ; 질병과 사고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	71
4) 이혼·사별 이후 삶의 고단함	73
제 3 절 요약 및 정책쟁점	82
1. 다문화가족 실태 및 사례조사 요약	82
2.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 쟁점	89
1) 주거·경제·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필요	89
2)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	91
제 4 장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95
제 1 절 정책방안	95
제 2 절 정책추진과제	97
1. (가칭)호남권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 설립방안	97
1) 필요성	97
2) 사례-서울 이주여성 디딤터	101
3) 호남권 이주여성 자립·자활센터 운영방안	104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해체위기 및 해체된 가족의 서비스 지원 확충 · 109	
1) 현황 및 필요성	109
2) 개선방안	110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전주센터의 운영 개선	111
1) 현황 및 필요성	111
2) 개선 방안	112
참고문헌	119

표 목 차

〈표 1-1〉 기존 정책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표 2-1〉 전국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17
〈표 2-2〉 전국 지역별 혼인 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	19
〈표 2-3〉 전국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20
〈표 2-4〉 전국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21
〈표 2-5〉 전국 연도별 국제이혼 추이	22
〈표 2-6〉 전국 지역별 이혼 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	23
〈표 2-7〉 전국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24
〈표 2-8〉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25
〈표 2-9〉 전국 사망자수 및 다문화 사망	26
〈표 2-10〉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27
〈표 2-11〉 전북 지역별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비율	29
〈표 2-12〉 전북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30
〈표 2-13〉 전북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31
〈표 2-14〉 전북 연도별 국제이혼 추이	32
〈표 2-15〉 전북 지역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비율	33
〈표 2-16〉 전북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34
〈표 2-17〉 전북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35
〈표 2-18〉 중앙정부 다문화가족 해체 관련 대응정책	37
〈표 2-19〉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2013)	38
〈표 2-20〉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관련 대응정책	39
〈표 2-21〉 전라북도 해체위기 및 해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관 운영	40
〈표 3-1〉 다문화가족 유형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	46
〈표 3-2〉 다문화가족 유형별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	47
〈표 3-3〉 다문화가족 유형별 학력수준	48
〈표 3-4〉 다문화가족 유형별 국적 취득 여부	48
〈표 3-5〉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	49

〈표 3-6〉 다문화 이혼 결혼생활 기간별 비중	49
〈표 3-7〉 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수	49
〈표 3-8〉 다문화가족 유형별 주거 소유형태	50
〈표 3-9〉 다문화가족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51
〈표 3-10〉 다문화가족 유형별 취업사항	51
〈표 3-11〉 다문화가족 유형별 취업 직종	52
〈표 3-12〉 다문화가족 유형별 종사상 지위	52
〈표 3-13〉 다문화가족 유형별 구직경로	53
〈표 3-14〉 다문화가족 유형별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53
〈표 3-15〉 결혼이민자의 이혼, 사별까지의 기간	54
〈표 3-16〉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포함) 사유	54
〈표 3-17〉 전북 지역 결혼이민자의 이혼 사유	54
〈표 3-18〉 이혼(별거) 후 자녀양육자	55
〈표 3-19〉 해체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에 있어 힘든 점	55
〈표 3-20〉 해체 다문화가족에게 어려운 일 있을 경우 의논대상	56
〈표 3-21〉 해체 다문화가족의 모임 참여정도	56
〈표 3-2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혜택 경험	57
〈표 3-23〉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사회보험 가입률	57
〈표 3-24〉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공공부조 수혜율	58
〈표 3-25〉 다문화가족 유형별 삶의 만족도	58
〈표 3-26〉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특성	60
〈표 3-27〉 심층면접 내용	63
〈표 4-1〉 이주여성 쉼터와 자활지원센터의 비교	98
〈표 4-2〉 전라북도의 설립근거	101
〈표 4-3〉 이주여성 자립자활센터의 주요 기능	105
〈표 4-4〉 호남권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의 운영주체별 장단점	108
〈표 4-5〉 다누리 콜센터의 상담유형(2012)	113
〈표 4-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상담유형(2012)	113
〈표 4-7〉 다누리콜의 부문별 제공현황	113
〈표 4-8〉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부문별 제공 현황	114
〈표 4-9〉 중앙과 지역센터의 이용비율(2012)	115
〈표 4-10〉 시간대별 상담 통계(2012)	11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8
〈그림 2-1〉 전국 연도별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추이	18
〈그림 2-2〉 전국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21
〈그림 2-3〉 전국 연도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추이	22
〈그림 2-4〉 전국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25
〈그림 2-5〉 전북 연도별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추이	28
〈그림 2-6〉 전북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31
〈그림 2-7〉 전북 연도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추이	32
〈그림 2-8〉 전북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35
〈그림 2-9〉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38
〈그림 3-1〉 국제결혼의 메커니즘	66
〈그림 3-2〉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 위기관리 체계	91
〈그림 4-1〉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96
〈그림 4-2〉 서울시 이주여성 디딤터 조감도	103
〈그림 4-3〉 이주여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틀	106
〈그림 4-4〉 가족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	109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내용
-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국가적인 글로벌화·국제화의 추진과정에서 외국 인력의 도입과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2013년 2월말 기준 체류 외국인 수는 1,422,622명으로 총 인구대비 2.78%에 해당되며 이 가운데 외국인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2005년 42,356건(전체혼인의 13.5%)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1년 29,762건으로 9.0%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한국사회의 가족관계 변화로 결혼이민자의 규모는 2012년에 268,000명에서 2020년에 351,000명으로 향후 8년간 3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9).

한편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로 자리잡게 되고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갈등 및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별 등으로 해체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전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1,495건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72.6%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별의 경우 부부간의 연령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해체 과정을 거친 가족이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 간의 연령 차이는 2011년 기준 9.5세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인 간 혼인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연령차가 2.2세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다문화가족 부부의 연령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 해체 현상은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부간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망도 결여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의 문제 등 생활 전반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예산 지원이나 추진체계 수립 등으로 다문화가족 일반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진행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해체 문제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과제는 국제결혼 중개관리와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1년 다문화 혼인²⁾의 비중은 전체 혼인건수 10,458건 중 다문화 혼인 건수 1,129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구성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전북지역 다문화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13.1%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2.6%의 이혼율보다 높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권에서 전남 다음으로 높다. 한편 부부간의 평균 연령 차이가 다문화 혼인의 평균 9.5세보다 높은 11.4세를 보여 배우자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가족의 해체 현상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전북 지역의 다문화가족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체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여 이혼, 사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결혼을 주요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족의 해체에 따른 체류 문제, 자녀양육 및 생활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로 여겨진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편 혹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모두를 포괄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의 국제결혼한 결혼이민자들은 2012년 8,648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97%(8,388명)를 차지하기에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의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를 분석하고 이혼, 사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정책적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모색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다문화 혼인과 이혼은 한국인(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귀화기준)을 포함하고 있기에 국적이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제결혼과 국제이혼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 형성과 해체 추이를 분석하고 이혼과 사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전략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와 연관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본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를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국과 전북지역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 추이를 분석하였고, 중앙과 지자체 단위에서 해체위기에 놓이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전국과 전북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 추이는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 해체 이후 생활에 있어서 전면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중에서 가족해체를 겪은 전북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하고,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로 해체 이후의 생활실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전북지역 실태조사와 사례조사의 분석을 통해 향후 다문화가족 해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전략은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방식으로 위기지원체계를 점검하여 위기가족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취약가족으로 접근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 전략 하에 구체적인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형성과 해체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연구방법으로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을 통한 문헌 연구와 전북 지역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조사를 위한 심층 인터뷰 실시로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1)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 형성과 해체 관련 논문 및 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 관련 통계 자료 분석
-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시군 관련 행정 자료 수집 및 검토

2) 원자료 재분석

-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조사내용 중 전북지역의 이혼, 사별한 결혼 이민자의 생활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유배우자인 결혼이민자와 비교 분석함.
- 전북지역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이혼 추이 파악을 위해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 분석

3) 사례 조사

- 조사대상 : 전북지역 국제결혼의 97%를 차지하는 여성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이혼, 사별과 관련하여 변화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조사방법 : 심층면접 기법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통찰해 볼 수 있음. 면담은 개별면담으로 개

인적 이야기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면담자의 자택이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에서 이루어졌고 대상자별로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음.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전사하였음. 심층면접 대상자는 20사례 선정되었고 면접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혼·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한 조사항목

대상	항목	주요내용
이혼·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반적 인적 사항	인적사항, 체류자격, 이주목적 등
	결혼과정	한국인과의 결혼이유, 결혼과정, 절차
	이혼·사별 과정	이혼 및 사별 이전의 가정생활 이혼과정, 이혼 이후의 생활/사별의 이유, 사별 이후의 생활
	양육 및 교육서비스 지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가족 내의 교육지원 지원받는 지역 교육서비스 현황
	사회적 관계	한국인 및 모국인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기관 등의 지원
	정책지원	정부의 현재 지원방식, 지원요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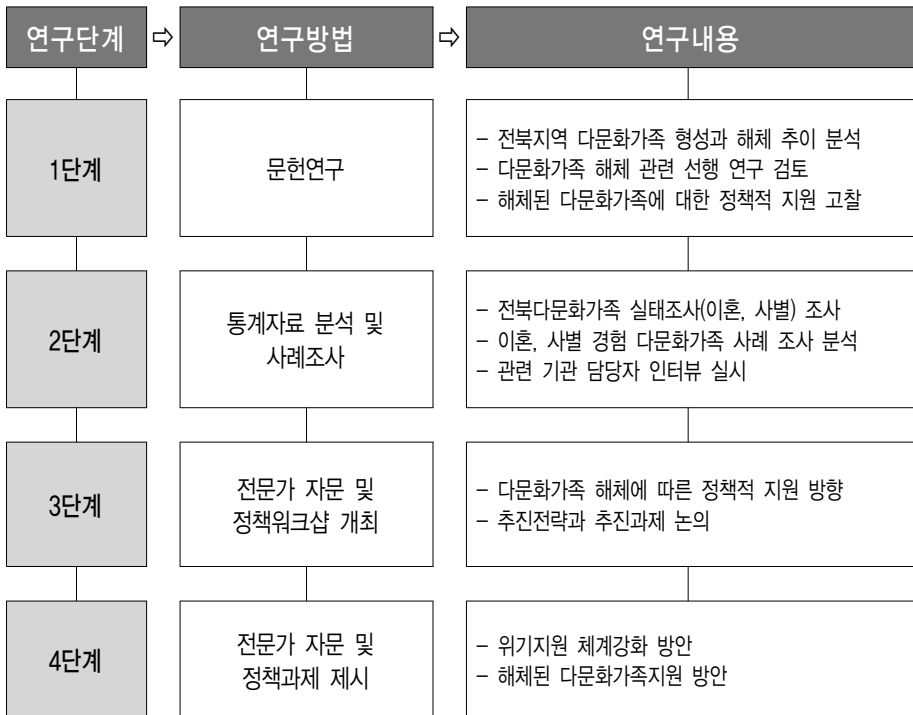
4)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의 진행을 위해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함. 1차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연구 참여자 선정을 의뢰하였고, 2차 자문회의에서는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방향과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 연구절차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절차를 도식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전체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의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 연구검토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자료적 접근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전국적 자료와 지역적 비교 연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다문화가족 해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1) 다문화가족의 부부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부부생활 및 가족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다문화가족 부부들의 갈등요인을 분석하였다.

2005년,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단위 조사 결과(설동훈 외, 2005; 2006)에서는 남편과의 성격차이, 생활방식의 차이가 부부갈등 요인의 1순위로 나타났다. 경기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문화 또는 생활방식의 차이가 부부갈등의 1순위 요인이었다. 김오남(2006)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부부의 갈등 정도가 한국인 일반 부부보다 높으며, 특히 문화적 차이가 부부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부부의 갈등요인으로 나타난 배우자간 성격 차이와 경제 문제, 남편의 음주는 일반 가족의 부부 갈등 요인이기도 하지만 문화, 생활방식, 가치관의 차이는 다문화가족이기에 나타나는 특수한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편 김이선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한국 배우자, 그리고 그의 가족원 간에 존재하는 가족 가치관의 차이가 가족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부간에 수평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하는데 비해 한국인 남편들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이로 인한 가족 갈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2)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요인을 분석한 연구

기존의 이혼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곽배희, 2001; 이명진, 2006)에서는 이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 동거, 시부모와의 관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연령은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데 30-40대 이혼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50대 이혼율이 낮다고 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의사는 감소하고 반대의 경우 이혼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 수준과 부부간의 상호 의사소통 수준이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두섭·이명진(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 부부간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이성이 결혼 안정성의 영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인이 외국인 경우 연령 격차는 혼인 지속 기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 실태의 제한된 사례를 가지고 한 연구 결과(설동훈, 2005)에서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사유를 가정폭력,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성격 차이 등으로 들고 있다.

한편 박재규(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출발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이것이 이혼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제결혼이 단기간에 진행되어 결혼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국제결혼 자체가 이혼을 이르게 하는 과정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결혼 전에 알게 된 한국 남성에 대한 정보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와 비교하여 차이가 클수록, 부부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부당행위를 경험 할수록, 한국어 사용 능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동거기간, 사회단체의 참여여부 그리고 출신국에 있어서는 필리핀과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희, 2006; 박재규, 2007).

3) 가족해체 이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해 분석한 연구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에 대한 연구는 가족해체에 이르는 과정과 원인을 질적 분석으로 연구한 논의(문경연, 2010; 박미정, 2011)와 해체된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와의 삶을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연구한 논의(정예리, 2011)들로 구성된다.

특정한 지역과 출신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 현실을,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한 연구들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4) 다문화가족 해체문제와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를 정책적 지원 방식으로 논의한 연구는 김이선 외(2010)의 연구와 홍미희(2011)의 연구, 그리고 김유경 외(2012)의 연구가 대표적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들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원자료로 분석하면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다문화가족의 해체 원인을 분석한 박재규(2011)의 논문도 이와 유사한 논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김이선 외의 연구에서는 전국적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 추이를 정리하면서 이혼, 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홍미희의 연구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다문화가족가족실태조사 원자료에서 이혼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고 컴퓨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혼실태를 파악하면서 정책적 지원 방식을 제안한다. 한편 김유경 외의 연구에서는 해체 및 가족 재구성 등으로 편입된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갈등 요인을 파악, 사회통합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다문화가족 해체의 요인과 부부간의 갈등 경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 다문화가족 해체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대상과 지역의 일반화로 지역화하기에는 자료 분석과 정책적 지원 방식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표1-1〉 기존 정책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료 분석 · 이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 인터뷰 · 전문가 자문회의 · 현장 전문가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 추이 정리 · 이혼, 사별한 다문화가족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의 생활실태 분석 · 해체 예방 차원의 정책 개입 ·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지원과 양육지원 제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 이주여성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인터뷰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전문가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지역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 및 정책 쟁점 정리 · 이혼 전, 위기단계, 이혼 후 단계별 지원 방안 논의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방안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 -일반/이혼·별거/사별/재혼의 특성별 분석 · 가족 유형별 다문화가족 500명 대상으로 실태조사 ·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 제도의 비교 분석 ·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특성 및 문제점 진단 · 다문화가족의 복지 수준 및 복지욕구 분석 · 정책방향-법제도의 개선, 기본생활, 건강 및 주거권 보장, 사회관계 및 사회적응력 강화, 정책방향에 따른 11개의 세부과제 제안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관련 이론의 분석과 검토 · 해체된 다문화가족 유형별 사례 조사 · 해체 위기가족과 해체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대응 분석과 문제점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전문가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특성 및 문제점 진단 ·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 정책지원 분석 ·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전략과 추진과제 제안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의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와 관련하여,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분석하면서 이혼, 사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해체 과정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전국적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전북 다문화가족 해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정책적 개입 방향과 지원 과제를 제안해 볼 수 있었다. 특히 도농의 혼합도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 해체 경향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지원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해체의 경향을 분석하는데에는 자료가 제한적이고 실태조사에 있어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심층적 사례 분석을 통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제 2 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대응정책 분석

제 1 절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제 2 절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응정책 분석

제 2 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대응정책 분석

제 1 절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1. 전국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1) 전국 다문화가족 형성 추이

2000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11,605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 332,090건 중 3.5%에 불과했으나 2011년 기준 29,762건으로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9.0%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현저히 증가해왔으며 국제결혼 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현재는 74.8%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다.

국제결혼의 전반적 추이는 2005년에 13.5%로 정점을 이루다 그 이후부터는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의 비율이 10%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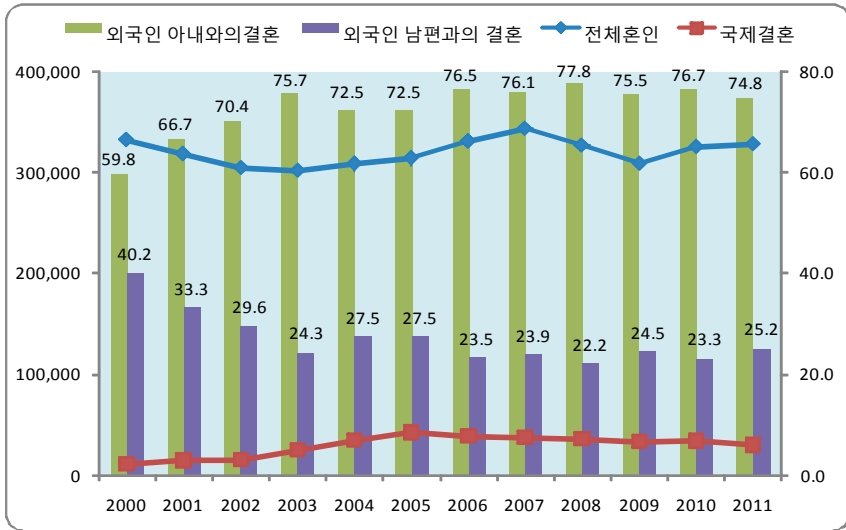
〈표 2-1〉 전국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혼인 건수	국제결혼		전체 국제결혼 건수 중			
		건수	%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	
				건수	%	건수	%
2000	332,090	11,605	3.5	6,945	59.8	4,660	40.2
2001	318,407	14,523	4.6	9,684	66.7	4,839	33.3
2002	304,877	15,202	5.0	10,698	70.4	4,504	29.6
2003	302,503	24,775	8.2	18,750	75.7	6,025	24.3
2004	308,598	34,640	11.2	25,105	72.5	9,535	27.5
2005	314,304	42,356	13.5	30,719	72.5	11,637	27.5
2006	330,634	38,759	11.7	29,665	76.5	9,094	23.5
2007	343,559	37,560	10.9	28,580	76.1	8,980	23.9
2008	327,715	36,204	11.0	28,163	77.8	8,041	22.2
2009	309,759	33,300	10.8	25,142	75.5	8,158	24.5
2010	326,104	34,235	10.5	26,274	76.7	7,961	23.3
2011	329,087	29,762	9.0	22,265	74.8	7,497	25.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2-1〉 전국 연도별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추이



아래의 <표 2-2> 전국 지역별 혼인 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³⁾를 보면, 2011년 국제결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2.5%), 전북(10.8%), 제주(10.3%), 충남(10.0%)의 순이며, 가장 낮은 곳은 울산과 대전(6.8%), 대구(7.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로 다문화 혼인을 포함한 전체 혼인 건수를 비교하면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80,78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제주가 3,631건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전체 혼인건수가 10,458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혼인 가운데 다문화 혼인으로 인한 다문화 구성비는 10.8%로 전국에서 두 번째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다문화구성비는 구성원에 있어서 한국인(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귀화기준)을 포함하고 있기에 외국 국적을 지닌 배우자와의 결혼인 국제결혼의 비율보다 높은 구성비를 보인다.

〈표 2-2〉 전국 지역별 혼인 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혼인 건수			다문화혼인 건수			다문화 구성비(%)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전국	309,759	326,104	329,087	33,862	35,098	30,695	10.9	10.8	9.3
서울	71,172	72,798	73,604	7,601	7,698	6,644	10.7	10.6	9.0
부산	18,997	20,577	20,591	1,637	1,797	1,619	8.6	8.7	7.9
대구	13,041	13,675	13,987	960	1,036	978	7.4	7.6	7.0
인천	16,957	17,740	18,292	1,814	1,890	1,555	10.7	10.7	8.5
광주	8,183	8,658	9,024	664	730	647	8.1	8.4	7.2
대전	8,989	9,456	9,822	812	813	666	9.0	8.6	6.8
울산	7,329	7,726	7,831	526	543	532	7.2	7.0	6.8
경기	75,238	80,187	80,788	8,171	8,115	7,329	10.9	10.1	9.1
강원	8,202	8,450	8,418	909	895	813	11.1	10.6	9.7
충북	8,773	9,268	9,629	864	1,043	874	9.8	11.3	9.1
충남	12,895	13,315	13,346	1,597	1,509	1,331	12.4	11.3	10.0
전북	9,711	10,633	10,458	1,257	1,309	1,129	12.9	12.3	10.8
전남	10,139	10,573	10,348	1,438	1,625	1,291	14.2	15.4	12.5
경북	14,634	15,738	16,085	1,375	1,626	1,423	9.4	10.3	8.8
경남	19,715	21,385	20,964	1,914	2,147	1,721	9.7	10.0	8.2
제주	3,349	3,585	3,631	397	460	375	11.9	12.8	10.3

주 : 1. 전국은 국외포함으로 지역별 합계와 전국 수치는 일치하지 않음.
 2. 다문화혼인은 한국인(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귀화기준) 포함.
 3. 부부 중 국내주소지 기준 집계(부부가 모두 국내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자료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11.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베트남이 34.3%로 가장 많고, 중국(33.9%), 필리핀(9.3%), 일본(5.0%), 캄보디아(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상위 3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77.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결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2000년 51.3%에서 2004년 73.6%까지 무려 20% 이상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결혼은 2000년 77건(1.1%)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0,128건을 기록하였고 2011년 국적별 국제결혼의 34.3%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감소하는 시기 이후부터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의 혼인이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3〉 전국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건수	6,945	9,684	10,6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549	
	51.3	72.0	65.6	71.2	73.6	67.0	49.1	50.7	46.9	45.2	36.6	33.9	
베트남	77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636	
	1.1	1.4	4.4	7.5	9.8	19.0	34.1	23.1	29.4	28.8	36.6	34.3	
일본	819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1,124	
	11.8	7.2	6.4	4.5	3.2	2.9	3.5	4.2	4.1	4.5	4.5	5.0	
필리핀	1,174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2,072	
	16.9	5.2	7.8	4.9	3.8	3.2	3.8	5.2	6.6	6.5	7.3	9.3	
캄보디아	1	2	2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961	
	0.0	0.0	0.0	0.1	0.3	0.5	1.3	6.3	2.3	3.4	4.6	4.3	
몽골	64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326	266	
	0.9	1.2	1.8	1.7	2.0	1.8	2.0	2.6	1.8	1.5	1.2	1.2	
태국	240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354	
	3.5	1.9	3.1	1.8	1.3	0.9	0.9	1.8	2.2	2.0	1.7	1.6	
우즈벡	43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317	324	
	0.6	0.7	1.7	1.7	1.0	1.1	1.1	1.2	1.7	1.5	1.2	1.5	
미국	231	262	267	322	341	285	331	376	344	416	428	507	
	3.3	2.7	2.5	1.7	1.4	0.9	1.1	1.3	1.2	1.7	1.6	2.3	
러시아	70	155	236	297	315	234	203	152	110	139	119	125	
	1.0	1.6	2.2	1.6	1.3	0.8	0.7	0.5	0.4	0.6	0.5	0.6	
기타	660	585	464	598	596	617	702	831	900	1,093	1,096	1,347	
	9.5	6.0	4.3	3.2	2.4	2.0	2.4	2.9	3.2	4.3	4.2	6.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2011년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출신국적은 중국(24.9%), 일본(22.8%), 미국(21.8%), 캐나다(6.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2000년 210건(4.5%)에서 2005년 5,037건(43.3%)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이듬해인 2006년 2,589건(28.5%)으로 급감하는 등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인 남성과의 결혼은 2000년 2,630건(56.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 1,709건(22.8%)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남성과의 결혼은 지난 10년간 1,000건대의 결혼건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는 주요 4개국 출신 국적별로 국제결혼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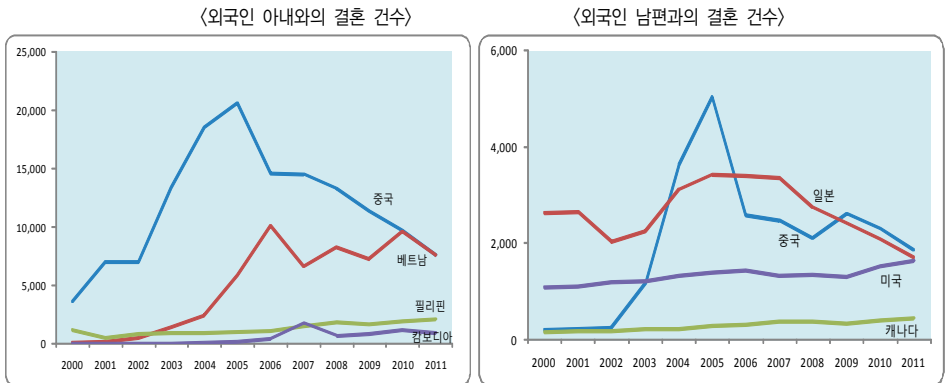
〈표 2-4〉 전국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건수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49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210	222	263	1,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7	2,293	1,869	
	4.5	4.6	5.8	19.8	37.9	43.3	28.5	27.7	26.1	32.1	28.8	24.9	
일본	2,630	2,664	2,032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2,422	2,090	1,709	
	56.4	55.1	45.1	37.3	32.7	29.4	37.5	37.3	34.1	29.7	26.3	22.8	
대만	29	26	35	58	82	92	90	111	109	94	94	123	
	0.6	0.5	0.8	1.0	0.9	0.8	1.0	1.2	1.4	1.2	1.2	1.6	
파키스탄	36	63	126	130	100	219	150	134	117	104	102	126	
	0.8	1.3	2.8	2.2	1.0	1.9	1.6	1.5	1.5	1.3	1.3	1.7	
프랑스	65	55	78	77	77	73	98	112	91	99	116	128	
	1.4	1.1	1.7	1.3	0.8	0.6	1.1	1.2	1.1	1.2	1.5	1.7	
독일	82	94	81	94	109	85	126	98	115	110	135	114	
	1.8	1.9	1.8	1.6	1.1	0.7	1.4	1.1	1.4	1.3	1.7	1.5	
영국	64	69	86	88	120	104	136	125	144	166	178	195	
	1.4	1.4	1.9	1.5	1.3	0.9	1.5	1.4	1.8	2.0	2.2	2.6	
캐나다	150	164	172	219	227	283	307	374	371	332	403	448	
	3.2	3.4	3.8	3.6	2.4	2.4	3.4	4.2	4.6	4.1	5.1	6.0	
미국	1,084	1,113	1,204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312	1,516	1,632	
	23.3	23.0	26.7	20.3	14.0	12.0	15.9	14.9	16.8	16.1	19.0	21.8	
호주	78	78	90	109	132	101	137	158	164	159	194	216	
	1.7	1.6	2.0	1.8	1.4	0.9	1.5	1.8	2.0	1.9	2.4	2.9	
기타	232	291	337	588	620	828	606	699	739	743	840	937	
	5.0	6.0	7.5	9.8	6.5	7.1	6.7	7.8	9.2	9.1	10.6	12.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2-2〉 전국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2) 전국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

2000년 전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11,495건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72.6%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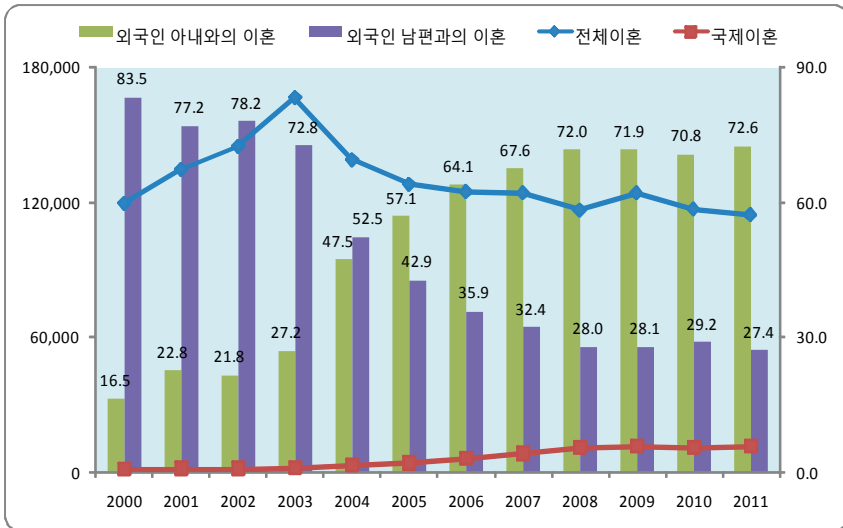
(표 2-5) 전국 연도별 국제이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이혼 건수	국제이혼		전체 국제이혼 건수 중			
		건수	%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건수	%	건수	%
2000	119,455	1,498	1.3	247	16.5	1,251	83.5
2001	134,608	1,694	1.3	387	22.8	1,307	77.2
2002	144,910	1,744	1.2	380	21.8	1,364	78.2
2003	166,617	2,012	1.2	547	27.2	1,465	72.8
2004	138,932	3,300	2.4	1,567	47.5	1,733	52.5
2005	128,035	4,171	3.3	2,382	57.1	1,789	42.9
2006	124,524	6,136	4.9	3,933	64.1	2,203	35.9
2007	124,072	8,294	6.7	5,609	67.6	2,685	32.4
2008	116,535	10,980	9.4	7,901	72.0	3,079	28.0
2009	123,999	11,473	9.3	8,246	71.9	3,227	28.1
2010	116,858	11,088	9.5	7,852	70.8	3,236	29.2
2011	114,284	11,495	10.1	8,349	72.6	3,146	27.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2-3) 전국 연도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추이



전국적으로 전체 이혼 건수는 2009년 123,999건에서 2011년 114,284건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다문화 이혼 건수는 13,653건에서 14,450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역별로 이혼 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29,214건), 서울(21,440건), 부산(7,692건), 경남(7,270건)의 순이며, 이 가운데 다문화 이혼 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3,667건), 서울(3,426건), 인천(803건), 부산(76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지역의 전체 이혼 건수는 4,215건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 시도의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서울(16.0%), 전남(13.7%) 다음으로 전북이 13.1%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세 번째의 높은 다문화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표 2-6〉 전국 지역별 이혼 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이혼 건수			다문화이혼 건수			다문화 구성비(%)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전국	123,999	116,858	114,284	13,653	14,319	14,450	11.0	12.3
서울	24,780	22,662	21,440	3,627	3,534	3,426	14.6	15.6	16.0
부산	8,753	7,847	7,692	733	669	768	8.4	8.5	10.0
대구	5,415	5,168	4,706	350	407	367	6.5	7.9	7.8
인천	8,038	7,511	7,004	876	867	803	10.9	11.5	11.5
광주	3,109	3,036	2,895	236	292	282	7.6	9.6	9.7
대전	3,475	3,232	3,095	262	263	275	7.5	8.1	8.9
울산	2,620	2,622	2,398	209	226	217	8.0	8.6	9.0
경기	30,530	28,519	29,214	3,327	3,415	3,667	10.9	12.0	12.6
강원	3,786	3,625	3,615	287	333	328	7.6	9.2	9.1
충북	3,785	3,603	3,728	369	392	416	9.7	10.9	11.2
충남	5,245	4,811	4,886	501	561	530	9.6	11.7	10.8
전북	4,330	3,948	4,215	457	525	552	10.6	13.3	13.1
전남	4,339	4,372	4,179	487	580	573	11.2	13.3	13.7
경북	5,556	5,531	5,379	459	552	566	8.3	10.0	10.5
경남	7,547	7,576	7,270	580	728	752	7.7	9.6	10.3
제주	1,507	1,513	1,442	126	163	186	8.4	10.8	12.9

주 : 1. 전국은 국외포함으로 지역별 합계와 전국 수치는 일치하지 않음.
 2. 다문화이혼은 한국인(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귀화기준) 포함.
 3. 부부 중 국내주소지 기준 집계(부부가 모두 국내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주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의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중국 국적을 가진 아내와의 이혼

율이 57.3%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23.1%), 필리핀(3.9%), 일본(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위 3개 국가 출신 여성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전국 기준 69.6%에서 2011년 84.3%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3개국 출신 여성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87.2%였다가 2011년 77.5%로 감소한 것을 보면, 기타 국가보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3개국 출신 여성과의 이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아내와의 이혼 건수는 2008년 5,398건까지 증가하였다가 소폭 감소하였다. 베트남 아내와의 이혼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급격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아내와의 국적별 국제결혼 비중과 비교해 보면, 2011년 중국의 국제결혼 비중은 33.9%인데 이혼율은 57.3%이고 베트남은 34.3%대 23.1%, 필리핀은 9.3%대 3.9%로 중국 출신 여성과의 이혼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전국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건수	1,567	2,382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건수	835	1,425	2,538	3,654	5,398	5,562	4,705	4,783
	%	53.3	59.8	64.5	65.1	68.3	67.5	59.9	57.3
베트남	건수	147	289	610	895	1,078	1,292	1,552	1,931
	%	9.4	12.1	15.5	16.0	13.6	15.7	19.8	23.1
일본	건수	114	116	147	157	205	227	259	292
	%	7.3	4.9	3.7	2.8	2.6	2.8	3.3	3.5
필리핀	건수	108	140	165	213	268	285	299	328
	%	6.9	5.9	4.2	3.8	3.4	3.5	3.8	3.9
캄보디아	건수	4	6	19	99	178	109	167	192
	%	0.3	0.3	0.5	1.8	2.3	1.3	2.1	2.3
몽골	건수	83	116	132	173	213	176	154	157
	%	5.3	4.9	3.4	3.1	2.7	2.1	2.0	1.9
태국	건수	42	36	33	59	85	113	128	137
	%	2.7	1.5	0.8	1.1	1.1	1.4	1.6	1.6
우즈벡	건수	67	75	105	112	160	174	174	133
	%	4.3	3.1	2.7	2.0	2.0	2.1	2.2	1.6
미국	건수	74	61	73	71	95	94	107	85
	%	4.7	2.6	1.9	1.3	1.2	1.1	1.4	1.0
러시아	건수	39	52	43	63	75	66	90	82
	%	2.5	2.2	1.1	1.1	0.9	0.8	1.1	1.0
기타	건수	54	66	68	113	146	148	217	229
	%	3.4	2.8	1.7	2.0	1.8	1.8	2.8	2.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한국 여성과 결혼 후 이혼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2011년 기준 일본(46.6%), 중국(36.2%), 미국(7.6%)의 순이며, 이들 3개 국가 출신 남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이나 미국 국적의 남편과의 이혼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출신 남편과의 이혼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일본과 중국 남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82.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4>는 주요 4개국 출신 국적별로 국제이혼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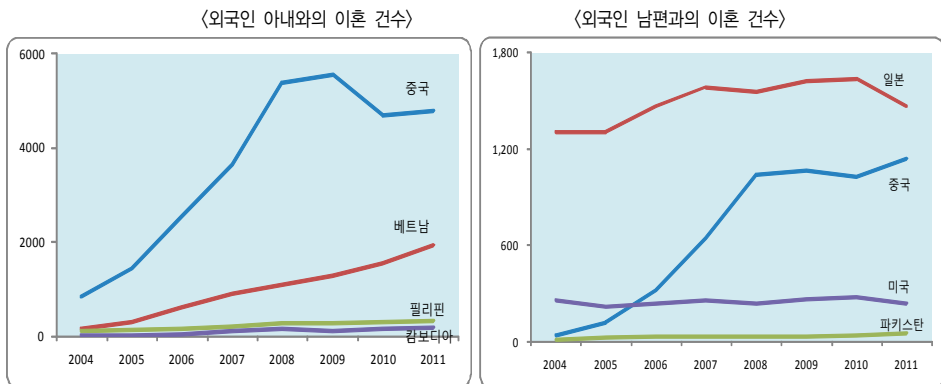
<표 2-8>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건수	1,733	1,789	2,203	2,685	3,079	3,227	3,236	3,14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건수	43	123	319	647	1,041	1,064	1,025	1,139
	%	2.5	6.9	14.5	24.1	33.8	33.0	31.7	36.2
일본	건수	1,309	1,306	1,466	1,587	1,556	1,628	1,638	1,466
	%	75.5	73.0	66.5	59.1	50.5	50.4	50.6	46.6
대만	건수	11	11	12	16	23	36	29	24
	%	0.6	0.6	0.5	0.6	0.7	1.1	0.9	0.8
파키스탄	건수	15	25	33	35	32	35	38	51
	%	0.9	1.4	1.5	1.3	1.0	1.1	1.2	1.6
독일	건수	16	16	7	10	10	12	17	12
	%	0.9	0.9	0.3	0.4	0.3	0.4	0.5	0.4
캐나다	건수	11	21	29	24	34	29	43	32
	%	0.6	1.2	1.3	0.9	1.1	0.9	1.3	1.0
미국	건수	260	217	235	257	238	263	277	240
	%	15.0	12.1	10.7	9.6	7.7	8.1	8.6	7.6
기타	건수	68	70	102	109	145	160	169	182
	%	3.9	3.9	4.6	4.1	4.7	5.0	5.2	5.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2-4> 전국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이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해체 외에 사별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표 2-9> 전국 사망자수 및 다문화 사망을 보면 2011년 기준 다문화 사망자는 1,557명으로 전체 사망자인 257,503명의 0.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 사망자도 포함된 것으로, 다문화 사망자 중에는 남성이 1,154명이고 여성이 348명으로 남성 사망자의 비율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의 연령차가 2011년 기준 평균 9.5세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인 남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가족해체 과정을 거친 가족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2-9> 전국 사망자수 및 다문화 사망

(단위: 명, %)

구분	전체			다문화 사망(명)			다문화 이외 사망(명)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전체	247,033	255,505	257,503	1,338	1,506	1,557	245,695	253,999	255,946
비율	100.0	100.0	100.0	0.5	0.6	0.6	99.5	99.4	99.4
남성	137,775	142,390	143,280	980	1,125	1,154	136,775	141,265	142,126
여성	109,232	113,085	114,168	312	351	348	108,920	112,734	113,820

- 주 : 1. 전체는 성별 미상 포함으로 성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2. 다문화사망은 한국인(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귀화기준) 포함.
 자료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11.

2. 전북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1) 전북 다문화가족 형성 추이

전북 지역의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는 전국 국제결혼의 증감세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결혼 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2006년 이후 증가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6년 이후 정부가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국제결혼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전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북 지역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 467건에서 2011년 1,111건으로 약 10년 사이 600건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인과의 혼인이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일반적인 결혼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국제결혼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비해 압도적이다.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은 2000년 403건에서 2008년 1,389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이후 완만한 변화의 폭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은 2000년 13.7%에서 2011년 10.1%로 오히려 3.6%p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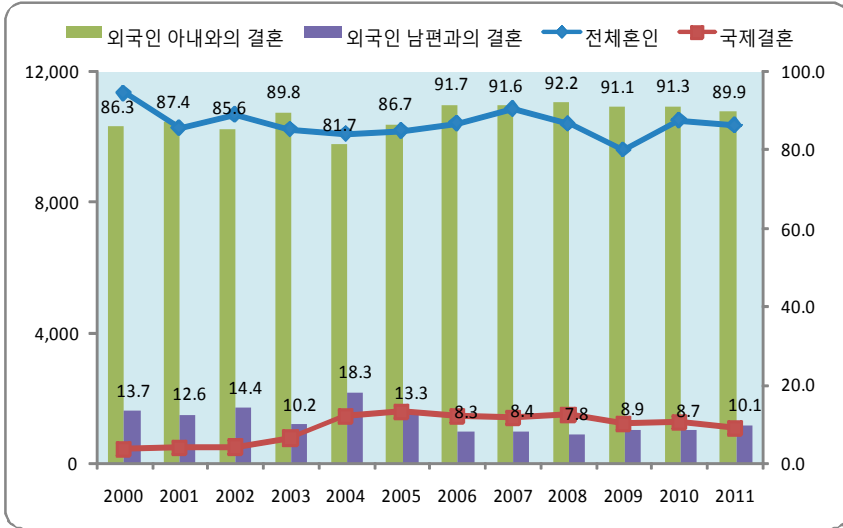
〈표 2-10〉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혼인 건수	국제결혼		전체 국제결혼 건수 중			
		건수	%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	
				건수	%	건수	%
2000	11,362	467	4.1	403	86.3	64	13.7
2001	10,281	506	4.9	442	87.4	64	12.6
2002	10,687	528	4.9	452	85.6	76	14.4
2003	10,246	801	7.8	719	89.8	82	10.2
2004	10,111	1,463	14.5	1,195	81.7	268	18.3
2005	10,196	1,597	15.7	1,385	86.7	212	13.3
2006	10,429	1,464	14.0	1,343	91.7	121	8.3
2007	10,864	1,432	13.2	1,312	91.6	120	8.4
2008	10,399	1,506	14.5	1,389	92.2	117	7.8
2009	9,605	1,252	13.0	1,141	91.1	111	8.9
2010	10,525	1,282	12.2	1,171	91.3	111	8.7
2011	10,353	1,111	10.7	999	89.9	112	10.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2-5〉 전북 연도별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추이



2011년 전북 지역의 전체 혼인 건수는 10,353건으로 혼인 건수가 많은 지역은 전주(3,765건), 군산(1,834건), 익산(1,712건)의 순이며, 국제결혼 건수가 많은 지역도 전주(288건), 군산(182건), 익산(166건)의 순으로 군지역 보다는 시지역이 국제결혼을 포함한 혼인 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체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 전체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7%로 나타났는데 반해 전체 혼인건수와 국제결혼 건수가 많았던 전주(7.6%), 군산(9.9%), 익산(9.7%)은 국제결혼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3곳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는 전북 평균 10.7%가 넘는 국제결혼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진안이 27.6%로 높았고, 다음 남원(19.4%), 장수(17.7%), 임실(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1〉 전북 지역별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비율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혼인 건수				국제결혼 건수				국제결혼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전북	10,399	9,605	10,525	10,353	1,506	1,252	1,282	1,111	14.5	13.0	12.2
전주	3,490	3,335	3,622	3,765	308	247	247	288	8.8	7.4	6.8	7.6
군산	1,689	1,639	1,856	1,834	221	199	218	182	13.1	12.1	11.7	9.9
익산	1,819	1,592	1,726	1,712	278	222	220	166	15.3	13.9	12.7	9.7
정읍	610	553	584	556	117	86	98	71	19.2	15.6	16.8	12.8
남원	412	382	402	422	82	70	74	82	19.9	18.3	18.4	19.4
김제	481	437	482	420	95	83	87	64	19.8	19.0	18.0	15.2
완주	617	534	585	489	98	87	79	67	15.9	16.3	13.5	13.7
진안	141	121	159	127	32	29	27	35	22.7	24.0	17.0	27.6
무주	130	123	129	131	24	17	18	17	18.5	13.8	14.0	13.0
장수	121	108	144	79	27	20	25	14	22.3	18.5	17.4	17.7
임실	170	129	142	152	33	24	31	26	19.4	18.6	21.8	17.1
순창	139	140	151	120	45	28	29	15	32.4	20.0	19.2	12.5
고창	296	243	268	265	67	53	52	42	22.6	21.8	19.4	15.8
부안	284	269	275	281	65	68	58	42	22.9	25.3	21.1	14.9

주 : 국제결혼 건수는 외국인 아내의 결혼 건수와 외국인 남편의 결혼 건수를 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건수 5건 이하는 ...으로 처리되어 지역별 합계가 전북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전북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혼인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은 중국과 베트남의 2개국이 2011년 기준 7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캄보디아도 각각 8.9%, 6.6%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4개국 출신 여성과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2.5%에서 2004년 90%를 넘어서고 2011년 현재 8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결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출신 여성과의 혼인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의 혼인은 2000년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북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혼인은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4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33.1%), 필리핀(8.9%), 캄보디아(6.6%), 일본(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2) 전북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건수	403	442	452	719	1,195	1,385	1,343	1,312	1,389	1,141	99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건수	163	289	294	450	863	846	539	608	648	472	376
	%	40.4	65.4	65.0	62.6	72.2	61.1	40.1	46.3	46.7	41.4	32.1
베트남	건수	3	4	16	67	149	369	578	343	426	368	492
	%	0.7	0.9	3.5	9.3	12.5	26.6	43.0	26.1	30.7	32.3	42.0
일본	건수	44	32	35	33	25	28	34	33	26	27	28
	%	10.9	7.2	7.7	4.6	2.1	2.0	2.5	2.5	1.9	2.4	2.4
필리핀	건수	126	60	60	89	90	78	87	70	138	94	99
	%	31.3	13.6	13.3	12.4	7.5	5.6	6.5	5.3	9.9	8.2	8.5
캄보디아	건수	0	0	0	0	0	7	29	176	59	80	95
	%	0	0	0	0	0	0.5	2.2	13.4	4.2	7.0	8.1
몽골	건수	0	4	8	8	13	16	29	33	15	21	14
	%	0	0.9	1.8	1.1	1.1	1.2	2.2	2.5	1.1	1.8	1.2
태국	건수	5	10	9	23	15	7	8	12	20	13	10
	%	1.2	2.3	2.0	3.2	1.3	0.5	0.6	0.9	1.4	1.1	0.9
우즈벡	건수	5	9	12	19	11	11	9	16	27	12	17
	%	1.2	2.0	2.7	2.6	0.9	0.8	0.7	1.2	1.9	1.1	1.5
미국	건수	3	4	5	6	3	4	3	2	6	5	14
	%	0.7	0.9	1.1	0.8	0.3	0.3	0.2	0.2	0.4	0.4	1.2
러시아	건수	3	3	7	7	12	6	7	7	2	2	2
	%	0.7	0.7	1.5	1.0	1.0	0.4	0.5	0.5	0.1	0.2	0.2
기타	건수	51	27	6	17	14	13	20	12	22	47	24
	%	12.7	6.1	1.3	2.4	1.2	0.9	1.5	0.9	1.6	4.1	2.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전북 지역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200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6년 이후 110~120건 정도의 국제결혼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남편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2011년 기준 전북 지역 총 112건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26건), 일본(19건), 캐나다(9건)의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2003에서 2004년 급증하였다가 2005년에서 2006년 다시 급격히 감소한 이래 안정적인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인 남성과의 결혼은 2007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에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비교적 완만한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6>은 전체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4개국의 국적별로 국제결혼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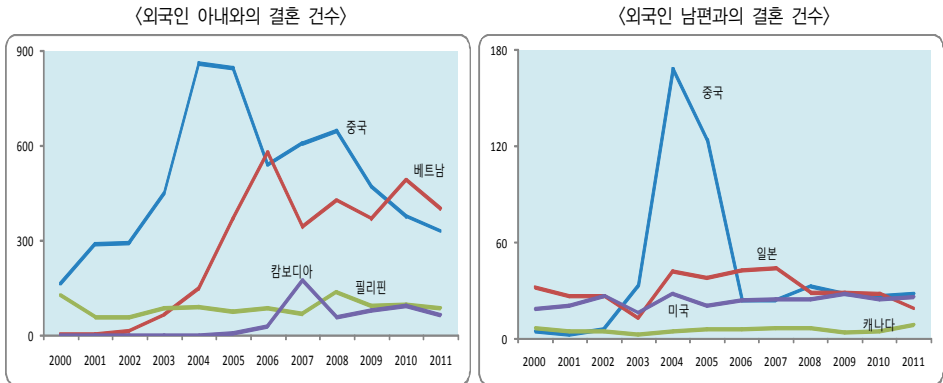
〈표 2-13〉 전북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건수	64	64	76	82	268	212	121	120	117	111	1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5	3	6	33	168	124	24	24	33	28	27	28
	7.8	4.7	7.9	40.2	62.7	58.5	19.8	20.0	28.2	25.2	24.3	25.0
일본	32	27	27	13	42	38	43	44	29	29	28	19
	50.0	42.2	35.5	15.9	15.7	17.9	35.5	36.7	24.8	26.1	25.2	17.0
대만	0	0	1	2	3	0	1	0	4	2	2	2
	0.0	0.0	1.3	2.4	1.1	0.0	0.8	0.0	3.4	1.8	1.8	1.8
파키스탄	0	1	0	1	0	1	1	1	1	2	2	2
	0.0	1.6	0.0	1.2	0.0	0.5	0.8	0.8	0.9	1.8	1.8	1.8
프랑스	0	1	1	1	1	3	1	3	2	1	0	2
	0.0	1.6	1.3	1.2	0.4	1.4	0.8	2.5	1.7	0.9	0.0	1.8
독일	0	0	1	2	3	1	1	2	3	0	2	4
	0.0	0.0	1.3	2.4	1.1	0.5	0.8	1.7	2.6	0.0	1.8	3.6
영국	0	1	3	0	4	4	5	1	3	2	2	0
	0.0	1.6	3.9	0.0	1.5	1.9	4.1	0.8	2.6	1.8	1.8	0.0
캐나다	7	5	5	3	5	6	6	7	7	4	5	9
	10.9	7.8	6.6	3.7	1.9	2.8	5.0	5.8	6.0	3.6	4.5	8.0
미국	19	21	27	16	28	21	24	25	25	28	25	26
	29.7	32.8	35.5	19.5	10.4	9.9	19.8	20.8	21.4	25.2	22.5	23.2
호주	1	0	1	3	1	2	2	5	1	5	5	3
	1.6	0.0	1.3	3.7	0.4	0.9	1.7	4.2	0.9	4.5	4.5	2.7
기타	0	5	4	8	13	12	13	8	9	10	13	17
	0.0	7.8	5.3	9.8	4.9	5.7	10.7	6.7	7.7	9.0	11.7	15.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2-6〉 전북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2) 전북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

전북 지역 전체 이혼 건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 4,176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1년 전북 다문화가족의 이혼 건수는 437건으로 전체 이혼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90.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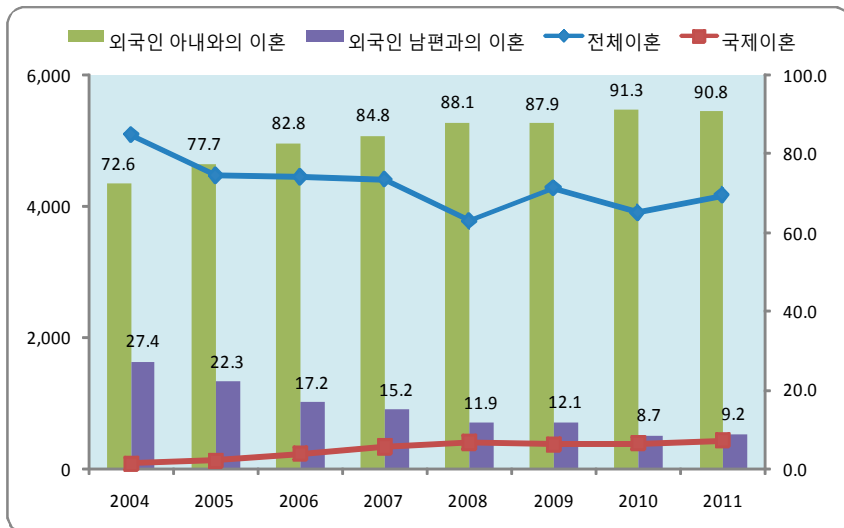
〈표 2-14〉 전북 연도별 국제이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이혼 건수	국제이혼		전체 국제이혼 건수 중			
		건수	%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건수	%	건수	%
2004	5,086	84	1.7	61	72.6	23	27.4
2005	4,471	121	2.7	94	77.7	27	22.3
2006	4,448	233	5.2	193	82.8	40	17.2
2007	4,417	336	7.6	285	84.8	51	15.2
2008	3,784	405	10.7	357	88.1	48	11.9
2009	4,285	379	8.8	333	87.9	46	12.1
2010	3,910	401	10.3	366	91.3	35	8.7
2011	4,176	437	10.5	397	90.8	40	9.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7〉 전북 연도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추이



2011년 전북의 전체 이혼 건수는 4,176건으로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혼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1,245건)이며, 군산(750건), 익산(727건), 정읍(29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총 437건으로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94건으로 가장 많고, 익산(78건), 군산(72건), 정읍(3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혼 중 국제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장수가 22.7%로 다문화 구성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주 22.0%, 부안 16.0%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혼인 건수 가운데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구성비와 국제이혼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2011년 기준 전주는 7.6%대 7.6%, 군산은 9.9%대 9.6%, 익산은 9.7%대 10.7%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장수는 국제결혼 비중이 71.7%인데 비해 국제이혼율은 22.7%이고, 무주는 13.0%대 22.0%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5〉 전북 지역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비율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이혼 건수				국제이혼 건수				국제이혼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전북	3,784	4,285	3,910	4,176	405	379	401	437	10.7	8.8	10.3	10.5
전주	1,123	1,300	1,161	1,245	95	98	101	94	8.5	7.5	8.7	7.6
군산	648	705	642	750	59	61	52	72	9.1	8.7	8.1	9.6
익산	740	802	707	727	73	64	71	78	9.9	8.0	10.0	10.7
정읍	255	315	282	296	34	24	19	34	13.3	7.6	6.7	11.5
남원	160	181	161	184	21	-	18	20	13.1	-	11.2	10.9
김제	195	221	231	209	30	20	24	21	15.4	9.0	10.4	10.0
완주	167	220	195	227	22	24	33	21	13.2	10.9	16.9	9.3
진안	45	54	67	50	-	-	10	7	-	-	14.9	14.0
무주	48	46	50	59	-	-	6	13	-	-	12.0	22.0
장수	44	61	37	44	-	-	-	10	-	-	-	22.7
임실	62	53	39	59	-	-	-	-	-	-	-	-
순창	50	63	64	57	-	-	15	9	-	-	23.4	15.8
고창	107	126	129	125	-	-	18	15	-	-	14.0	12.0
부안	140	138	145	144	-	11	16	23	-	8.0	11.0	16.0

주 : 국제이혼 건수는 외국인 아내의 이혼 건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 건수를 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제이혼 건수 5건 이하는 ...으로 처리되어 지역별 합계가 전북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온라인간행물.

전북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2011년 397건으로 7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336건 증가하였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31건(58.2%)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95건(23.9%), 필리핀 21건(5.3%), 캄보디아 15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3개 국가 출신 여성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7.2%에서 2011년 87.4%로 20%p 이상 증가하였으며 앞서 전국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이혼추이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16) 전북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건수	61	94	193	285	357	333	366	39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건수	28	53	127	164	227	234	209	231
	%	45.9	56.4	65.8	57.5	63.6	70.3	57.1	58.2
베트남	건수	5	20	29	57	61	49	90	95
	%	8.2	21.3	15.0	20.0	17.1	14.7	24.6	23.9
일본	건수	8	0	5	4	9	5	3	5
	%	13.1	0.0	2.6	1.4	2.5	1.5	0.8	1.3
필리핀	건수	8	10	13	17	21	16	17	21
	%	13.1	10.6	6.7	6.0	5.9	4.8	4.6	5.3
캄보디아	건수	0	0	0	12	13	4	17	15
	%	0.0	0.0	0.0	4.2	3.6	1.2	4.6	3.8
몽골	건수	4	4	4	13	10	7	10	11
	%	6.6	4.3	2.1	4.6	2.8	2.1	2.7	2.8
태국	건수	2	1	3	2	2	4	3	3
	%	3.3	1.1	1.6	0.7	0.6	1.2	0.8	0.8
우즈벡	건수	2	5	6	8	4	8	4	6
	%	3.3	5.3	3.1	2.8	1.1	2.4	1.1	1.5
미국	건수	3	0	2	1	0	0	2	3
	%	4.9	0.0	1.0	0.4	0.0	0.0	0.5	0.8
러시아	건수	0	0	1	4	4	2	3	2
	%	0.0	0.0	0.5	1.4	1.1	0.6	0.8	0.5
기타	건수	1	1	3	3	6	4	8	5
	%	1.6	1.1	1.6	1.1	1.7	1.2	2.2	1.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외국인 남편과의 국제이혼 추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37.5%), 일본(32.5%), 미국(12.5%) 3개국이 차지하는 이혼율이 82.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출

신 남편과의 이혼은 2004년 4.3%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47.9%로 정점을 보이다가 2011년 37.5%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 남편과의 이혼은 2004년 65.2%에서 2011년 32.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8>은 전북 지역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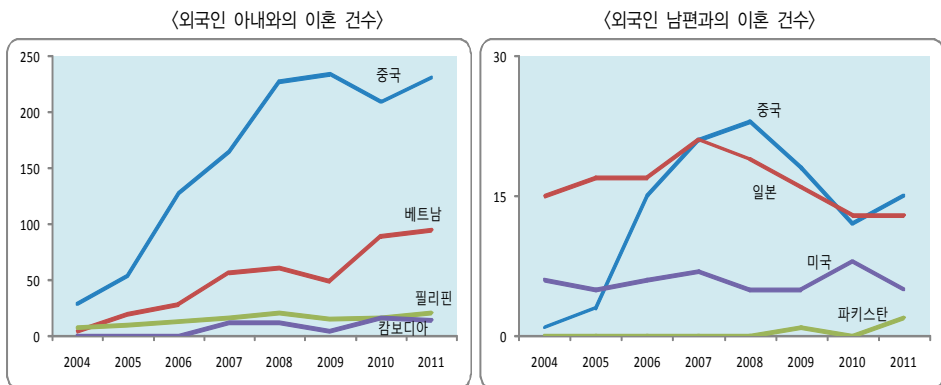
<표 2-17> 전북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단위: 건수,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건수	23	27	40	51	48	46	35	4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건수	1	3	15	21	23	18	12	15
	%	4.3	11.1	37.5	41.2	47.9	39.1	34.3	37.5
일본	건수	15	17	17	21	19	16	13	13
	%	65.2	63.0	42.5	41.2	39.6	34.8	37.1	32.5
대만	건수	0	0	0	0	0	1	0	2
	%	0.0	0.0	0.0	0.0	0.0	2.2	0.0	5.0
파키스탄	건수	0	0	0	0	0	1	0	2
	%	0.0	0.0	0.0	0.0	0.0	2.2	0.0	5.0
캐나다	건수	0	1	1	1	0	0	0	1
	%	0.0	3.7	2.5	2.0	0.0	0.0	0.0	2.5
미국	건수	6	5	6	7	5	5	8	5
	%	26.1	18.5	15.0	13.7	10.4	10.9	22.9	12.5
기타	건수	1	1	1	1	1	5	2	2
	%	4.3	3.7	2.5	2.0	2.1	10.9	5.7	5.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2-8> 전북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제 2 절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응정책 분석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에서부터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들이 중심이 되어 가족해체와 관련한 예방정책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에는 관심이 소홀하였으나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세 속에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족해체 예방정책이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과 사별로 인한 다문화가족 해체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대응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앙정부의 대응정책

가족갈등, 폭력피해,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혼에 이르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중앙에서는 국제결혼 피해예방과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결혼 이민관의 역할을 높이고 다문화가족의 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18> 다문화가족 해체 관련 추진 정책을 살펴보면, 2013년에 수립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 중국 등 주요 상대국 정부와의 국제결혼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검토, 국제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 제도 정착화,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사전교육 및 피해 상담 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상담언어 서비스와 이주여성쉼터의 단계적 확대,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의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다.

〈표 2-18〉 중앙정부 다문화가족 해체 관련 대응정책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	2010년 ~ 2012년 (3년간)	2013년 ~ 2017년 (5년간)
과제 구성	5대 영역 61개 세부과제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추진 기관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공정위,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외교부, 경찰청, 방통위, 법원,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관리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서비스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거주·자활 지원기관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검토 -신상정보제공제도 정착화 -국제결혼중개업 단속, 조사 강화 · 피해자 보호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언어서비스 확대 -이주여성쉼터 단계적 확대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이혼, 이혼과정 상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이혼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가 간 제도 모순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약 추진

자료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2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구체적으로 해체위기에 있거나 해체 이후 이주여성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이주여성 그룹홈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자국어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여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적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상담원이 가정폭력, 가족갈등, 성폭력, 성매매, 체류, 법률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시설·경찰·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방문을 통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전주, 구미 등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2-9〉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이주여성쉼터는 가정폭력 등 피해발생시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의 일시 보호와 함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법률·출국·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 16개 시도에 22개소가 있으며 전북은 전주와 익산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해체 이후 혹은 해체 위기에 놓인 이주 여성은 쉼터에 거주하며 심리정서적 지원과 숙식,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들이 일정기간 쉼터에서 머무른 이후에는 경제적 자활·자립 역량이 없는 상태로 강제 퇴소하게 되고, 퇴소 이후 갈 곳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해체 이후 혹은 해체 위기에 놓인 이주여성들이 지속적인 보호를 받으며 자립기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 등 이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표 2-19〉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2013)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22	3	1	2	1	1	1	1	3	1	1	1	2	1	1	1	1
입소정원(명)	259	27	15	27	11	11	15	13	29	10	15	11	30	10	13	10	12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는 이주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알선,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동반자녀의 육아 및 보육지원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이주여성디딤터란 명칭으로 1개소 운영 중이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입소 대상은 쉼터에서 합법적 국내체류가 가능하며 입소를 희망하고 동의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 자활의지가 강하고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어 국내체류가 가능한 자, 아동을 동반하고 이혼소송중인자 중 기관장의 의뢰를 받은 자, 입소 이주여성의 동반아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외에도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보호시설로 이주여성 그룹홈은 1개로 입소 정원이 10명으로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생활 가정의 체계를 갖고 있다.

2. 전라북도의 대응정책

<표 2-20>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관련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전북은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체위기 및 해체가족을 위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20>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관련 대응정책

구분	주요내용	운영방법	사업대상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운영	관계와 소통, 문화의 이해, 국제결혼관련 법률, 사례발표, 갈등 상담, 세계화와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행복프로그램운영 140백만원 (도 자체 사업)	700가정 (부부·자녀·시부모 등)
상담사업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 전문인력 활용 연간 80회기 이상 (가족상담 30회기 이상 필수)	이혼가족 포함 다문화가족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구성원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의 학습과 활동기회를 가짐으로써 가족 및 부부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밀한 가족·부부관계를 증진시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프로그램은 부부교육과 배우자교육, 결혼이민자교육, 가족레크리에이션 및 가족화합의 시간 등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문화가족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친인척과의 관계, 자녀문제, 성문제, 경제문제, 취업상담 등 다양한 내용에 걸쳐 상담이 실시되며, 부부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외도·가출·폭력·별거·이혼 등 부부갈등 및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상담과 이혼 관련 법률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표 2-21〉 전라북도 해체위기 및 해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관 운영

구분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익산	전주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신고접수 및 이주여성상담 - 폭력피해자 지원, 체류·이혼 및 법률·생활(부부 갈등, 가족갈등)·노동·의료상담 - 통역 및 번역 지원(의료,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전문기관)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입소 보호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간리 위한 의료 지원 - 남편 및 가족상담 통한 가정회복 기능 -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사업대상	2011년 5,381건 상담(부부 갈등, 이혼 등)	입소 정원 12명	입소 정원 18명
사업비	194백만원 (국비 169백만원, 도비 25백만원)	141백만원 (국비/도비/시군비)	134백만원 (도비/시군비)

해체위기에 있거나 해체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개소와 이주여성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77 전북전주센터에서는 피해자 신고접수 및 폭력피해자 지원, 체류·이혼·법률·생활·노동·의료상담과 함께 통번역서비스,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등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주여성쉼터는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의료·법률·출국 등의 문제를 지원해주는 일시보호시설로 전북지역에 아시아이주여성쉼터(전주)와 전북이주여성쉼터(익산) 2개소가 있다.

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속적인 보호, 취업,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쉼터에서 퇴소한 이주여성들은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특히 동반자녀와 함께 쉼터에 입소한 이주여성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향후 해체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중앙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다문화가

족 해체 예방 강화와 해체 위기 가족에 대한 기관의 설치 운영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방에서는 해체위기에 놓이거나 이미 해체된 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3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분석

- 제 1 절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해체 실태
- 제 2 절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 제 3 절 요약 및 정책 쟁점

제 3 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제 1 절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해체 실태

1. 조사자료 개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09년에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2년도에 2차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2009년의 실태조사는 대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와 출생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를 주요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의 형식을 띠었다.

그러나 2011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⁴⁾되면서 2012년에 진행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9년의 실태조사 대상과 함께 조사대상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표본조사로 추진하였다. 현재는 2012년의 실태조사에 대한 지역별 기초 자료가 배포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문화가족의 해체 실태에 대한 지역적 조사 결과는 2009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김승권 외, 2010)와 이를 근거로 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조경옥 외, 2010)에 의거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2009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출입국 관리소에 등록된 모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거주가 확인된 131,70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73,669가구가 응답하여 조사 완료율이 56%에 이르렀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9년 당시 현지 조사원이 확인한 결과 5,436명이 최종 조사 대상이었고 조사가 완료된 수는 4,043명이었다. 그러나 지역별, 성별, 국적별 응답률에 따른 사후보정을 실시하여 응답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전라북도 조사대상자의 수는 최종적으로 5,436명으로 나타났다.

4) 2011년 4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모든 사유의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상자 특성에 의거하여 전국 단위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지역적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시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통계적 자료는 2009년의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의 일반 다문화가족과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특성을 비교 정리하고, 2012년에 표본조사로 실시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중에서 다문화가족해체와 관련된 항목들을 기존 보고서에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적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이후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조명하였다.

2. 전북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1) 일반적 특성

2009년에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전북 지역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특성을 인구사회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을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은 베트남, 중국조선족, 한족의 순으로 구성비를 보였고 이혼, 사별한 가족은 중국 조선족,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 현상은 다문화가족의 초기 형성기에 들어온 출신국이 중국 조선족, 필리핀, 베트남의 순으로 결혼 기간과도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3-1〉 다문화가족 유형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출신국	중국(조선족)	21.6	37.2
	중국(한족, 기타 민족)	20.0	14.5
	베트남	28.6	13.5
	필리핀	13.3	26.3
	일본	6.3	2.8
	태국	1.3	1.0
	캄보디아	4.6	0.8
	기타	4.3	4.0
전체(% , 명)		100.0 (5,306)	100.0 (130)

연령별로는 일반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20대가 41%로 다수를 점하였으며 다음이 30대로 33.2%, 40대 이상이 25.8%를 차지하였다. 이혼 사별한 가족은 40대 연령층이 34.9%, 30대가 31%, 20대가 21.7%의 분포를 보였다.

배우자의 연령을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에서는 40대의 배우자가 56.7%로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0대 이상이 23.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배우자 연령은 40대가 62.8%이고 50대 이상도 34.2%를 차지하여 40대 이상이 97%의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

〈표 3-2〉 다문화가족 유형별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결혼이민자 연령	29세 이하	41.0	21.7
	30-39세	33.2	31.0
	40-49세	20.4	34.9
	50세 이상	5.4	12.4
배우자 연령	29세 이하	0.7	1.4
	30-39세	19.1	1.6
	40-49세	56.7	62.8
	50세 이상	23.5	34.2
전체(%·명)		100.0(5,306)	100.0(130)

한편 교육수준별로 일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 60%, 중학교 이하가 35%를 차지한 반면 이혼, 사별한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 65%, 중학교 이하가 33.2%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학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이혼, 사별한 결혼이민자 출신국 비율이 전북의 경우에는 중국 조선족과 필리핀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중국과 필리핀 출신국 결혼이민자들이 다른 출신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일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배우자의 학력을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상이 71.4%로 나타났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중학교 이하가 45.1%로 일반 다문화가족의 배우자 학력 가운데 중학교 이하가 28.6%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여 낮은 학력을 보이고 있었다.

〈표 3-3〉 다문화가족 유형별 학력수준

(단위: %, 명)

구 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결혼이민자 학력수준	초등학교 이하	9.6	11.2
	중학교	29.4	22.0
	고등학교	40.0	47.1
	대학교 이상	20.1	19.7
배우자 학력수준	초등학교 이하	9.0	14.3
	중학교	19.6	31.8
	고등학교	51.7	44.8
	대학교 이상	19.7	9.1
전체(% , 명)		100.0(5,306)	100.0(130)

한편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국적 취득을 보면 해체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취득 비율이 58.9%로 나타나 일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율 28.2%보다 높았다. 이 상황은 해체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의 체류기간이 일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보다 오래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해체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 미취득 비율이 41.1%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의 체류권 문제는 불안정한 삶의 기반과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표 3-4〉 다문화가족 유형별 국적 취득 여부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국적 취득	28.2	58.9
국적 미취득	71.8	41.1
전체(% , 명)	100.0(5,278)	100.0(123)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를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2-5년 미만 35.1%를 차지하고 있었고 5-10년 미만이 22.1%를 차지하였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이혼의 경우 5-10년 미만 37.1%, 사별은 10년 이상이 40%로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은 5년 미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과 사별의 경우 5-10년 미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문화인구동태통계를 통해 나타난 다문화 이혼의 경우 결혼생활기간을 살펴보면, 2009년 결혼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28.5%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0.7%로 가장 많아지고, 2011년에는 33.5%로 전

년대비 2.8%p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결혼생활 1년 미만인 초기부터 5-10년 미만에 점차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전북 지역은 결혼생활기간 5-10년 미만에 이혼하는 비율이 37.1%에 이르러 결혼 초창기 보다는 결혼생활을 지속한 이후에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1년 미만	13.1	1.4	15.0
1-2년 미만	16.4	7.1	0.0
2-5년 미만	35.1	17.1	15.0
5-10년 미만	22.1	37.1	30.0
10년 이상	13.3	37.1	40.0
전체 (%, 명)	100.0 (4,827)	100.0 (110)	

〈표 3-6〉 다문화 이혼 결혼생활 기간별 비중

(단위: %, 명)

구분	전체			다문화 이혼			한국인(출생기준)간 이혼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년 미만	1년 미만	5.0	4.8	4.9	17.6	15.5	15.1	3.5	3.3	3.5
	1-3년	12.0	11.7	11.2	28.5	25.7	24.4	9.9	9.8	9.3
	3-5년	10.2	10.4	10.7	24.8	19.5	18.3	8.4	9.1	9.5
5년 이상-10년 미만	19.1	18.8	19.0	23.7	30.7	33.5	18.5	17.1	16.9	
10년 이상-15년 미만	16.1	15.9	15.2	2.7	5.3	5.2	17.8	17.4	16.6	
15년 이상-20년 미만	14.8	14.5	14.2	1.5	1.8	1.8	16.5	16.2	16.0	
20년 이상	22.8	23.8	24.8	1.3	1.5	1.7	25.5	26.9	28.1	
평균 결혼생활기간	12.9	13.0	13.2	4.1	4.7	4.9	14.0	14.2	14.4	

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수를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60%였고, 해체 다문화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37.5%, 1명이 37.6%로 나타났다.

〈표 3-7〉 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수

자녀수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0명	60.0	37.5
1명	21.0	37.6
2명	16.2	19.0
3명 이상	2.8	6.0
전체 (%, 명)	100.0 (4,530)	100.0 (126)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60%이상이 자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과 결혼생활 기간이 이혼, 사별한 가족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혼, 사별한 결혼이민자들은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62.5%에 해당되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 한부모 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주거 및 경제생활

다문화가족 유형별 주거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3-8>과 같다.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가 38.4%, 배우자 부모 소유가 34.3%, 전세 또는 월세가 22.6%로 나타났고,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49.2%가 전세 또는 월세로 일반 다문화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주거 소유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다문화가족 유형별 주거 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38.4	20.2
배우자 부모 소유	34.3	12.1
전세 또는 월세	22.6	49.2
기타	4.6	19.4
전체 (%, 명)	100.0 (5,192)	100 (124)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26.8%를 차지하였고 100-200만원 미만인 37.9%, 300만원 이상이 5%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이혼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79.5%, 50만원 미만인 24.4%를 나타냈으며, 사별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41%로 나타났다. 일반 다문화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소득 분포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다문화가족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50만원 미만	6.4	24.4	41.0
50-100만원 미만	20.4	41.5	38.5
100-200만원 미만	37.9	18.3	12.8
200-300만원 미만	12.3	3.7	2.6
300만원 이상	5.0	0	0
모르겠다	18.0	12.2	5.1
전체 (%, 명)	100.0 (5,048)	100.0 (121)	

현재 취업비율을 보면 취업여부에 있어 일반 다문화가족이 32.8%이고,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있어서는 이혼의 경우가 52.9%, 사별의 경우 56.1%로 나타나 일반 다문화가족 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취업비율에 있어서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본 가구소득 분포에서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아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을 받는 직종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은 더 낮은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하게 한다.

〈표 3-10〉 다문화가족 유형별 취업사항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현재 일하고 있다	32.8	52.9	56.1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적 있다	17.8	28.2	24.4
지금까지 일한적 없다	49.4	18.8	19.5
전체 (%, 명)	100.0 (5,192)	100.0 (126)	

취업직종을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서비스, 판매종사자가 29.6%, 가사 및 기타단순노무자 24%, 전문가 및 임직원 관리자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이혼의 경우 서비스 판매종사자 42%, 전문가 및 임직원 관리자 20%, 가사 및 기타단순노무자에 18%의 분포를 보였고, 사별의 경우 서비스 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가 19%, 가사 및 기타단순노무자 19%, 농림어업종사자 14.3%로 나타났다.

〈표 3-11〉 다문화가족 유형별 취업 직종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서비스·판매종사자	29.6	42.0	19.0
농림어업 종사자	9.1	6.0	14.3
기능기계조립종사자	7.9	12.0	4.8
가사·기타단순노무자	24.0	18.0	18.0
사무종사자	1.9	2.0	19.0
전문가 및 임직원 관리자	18.0	20.0	0.0
기타	9.3	0.0	4.8
전체(% , 명)	100.0(2,036)	100.0(71)	

종사상 지위는 일반다문화가족이든 해체된 다문화가족 모두 임시 일용근로자에 각각 52.2%, 57.8%, 61.9%로 나타나 모두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2〉 다문화가족 유형별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상용근로자	23.2	26.7	28.6
임시·일용근로자	52.2	57.8	61.9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0.6	8.9	0.0
무급가족종사자	4.5	0.0	0.0
기타	9.6	6.7	9.5
전체(% , 명)	100.0(1,865)	100.0(66)	

한편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구직경로를 분석해 보면 아래의 <표 3-13>과 같다.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모국인 친구, 친척소개로 구직을 하게 되는 비율이 2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인 친구, 지인의 소개가 19.3%, 대중매체나 전단지 등을 통한 구직이 13.2%를 차지하였다. 이혼의 경우 대중매체나 전단지가 29%, 모국인 가족, 친척소개가 21%를 차지하였고 사별의 경우 모국인 가족과 친척소개, 한국인 친구나 지인의 소개가 각 3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혼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표 3-13〉 다문화가족 유형별 구직경로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이혼	사별
본인의 가족, 친척소개	10.6	3.2	3.4
배우자의 가족, 친척소개	14.3	8.1	10.3
모국인 가족, 친척소개	21.1	21.0	31.0
한국인 친구, 지인의 소개	19.3	17.7	31.0
대중매체나 전단지	13.2	29.0	3.4
공공기관의 소개	7.3	4.8	17.2
기타	14.1	16.2	3.7
전체(% , 명)	100.0(5,048)	100.0(121)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분석해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2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이혼사례는 자녀양육을, 사별의 경우는 낮은 임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따라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을 하지만 한부모가족으로써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자녀양육이나 낮은 임금에 대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다문화가족 유형별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이혼	사별
언어소통의 어려움	25.1	13.6	6.9
낮은 임금	11.1	12.1	20.7
고된 일	10.1	12.1	17.2
편견과 차별	9.8	13.6	17.2
자녀양육	9.9	19.7	13.8
별로 어려움 없음	16.4	16.7	10.3
기타	17.6	12.2	13.9
전체(% , 명)	100.0(2,415)	100(95.0)	

3) 해체 사유 및 생활의 어려움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12년의 실태조사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결혼생활 5년 미만 시기에 이혼, 사별하는 이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결혼생활기간이 5년 이상 지난 후에 이혼, 사별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에는 2009년의 경우에도 초기 이혼, 사별보다는 5년-10년 미만 시기에 가족이 해체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표 3-15) 결혼이민자의 이혼, 사별까지의 기간

(단위: %)

구분	3년미만	3-5년미만	5-10년	10-15년미만	15년 이상	평균
2009년 실태조사(%)	28.9	24.2	25.7	7.4	13.8	4.7
2012년 실태조사(%)	14.1	14.7	36.6	12.0	22.6	10.6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이혼사유는 2009년의 경우 성격차이 29.4%, 경제적 무능력 19%, 학대와 폭력 12.9%로 나타났고 2012년의 경우 성격차이 48.1%, 경제적 무능력 20.7%, 학대와 폭력이 4.9%로 일반 가족들과 유사한 이유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2009년 당시 이혼의 사유가 성격차이가 21.4%에 머무르고 경제적 무능력 21.1%, 학대와 폭력이 17.7%로 나타나 전국 단위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혼 사유를 동일시 할 수 없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16)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포함) 사유

(단위: %)

구분	외도	성격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기타	
2009년 실태조사(%)	13.2	29.4	7.0	19.0	12.9	8.7	9.8	-	
2012년 실태조사 (%)	2009동일 조사대상	5.5	47.5	6.6	22.6	5.1	6.2	1.1	3.9
	2012신규 조사대상	3.6	50.3	8.4	14.3	4.2	4.8	0.0	5.6
	전체	5.1	48.1	7.0	20.7	4.9	5.9	5.1	4.3

(표 3-17) 전북 지역 결혼이민자의 이혼 사유

(단위: %)

구분	외도	성격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기타	전체
비율(%)	15.0	21.4	7.6	21.1	17.7	5.0	4.3	7.8	100.0(71)

한편 2012년 실태조사에서 현재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경우 자녀 양육자가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인 경우는 37%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인 경우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이혼(별거) 후 자녀양육자

(단위: %)

구분		자녀없음	자녀있음			계
			본인	배우자	기타	
전체		51.1	37.0	9.2	2.7	100.0
성별	여성	49.5	41.4	7.5	1.6	100.0
	남성	60.0	11.4	19.1	9.4	100.0
거주지역	동부	51.4	36.9	9.1	2.6	100.0
	읍면부	45.7	39.3	10.5	4.5	100.0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외로움, 언어문제, 자녀양육의 순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 사별로 인한 배우자의 부재는 당장 생활의 곤란함과 함께 특히 가족 내부에서의 가교 지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혼, 사별로 인해 남편이나 시댁 식구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이(김이선 외, 2011) 이들에게 외로움은 또 다른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9〉 해체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에 있어 힘든 점

(단위: %, 명)

구분	비율(%)
힘든 점 없음	7.0
외로움	17.1
가족간의 갈등	4.6
자녀양육	7.6
자녀교육	6.3
경제적 어려움	37.8
언어문제	10.9
생활방식, 관습 등 문화차이	1.1
편견과 차별대우	3.4
기타	4.2
전체(% , 명)	100.0(120)

더불어 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의논하는 대상을 모국인과 한국인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과반수 이상 의논대상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혼, 사별로 인해 가족관계의 공통점이 줄어들면서 모국인들과의 관계도 역시 위축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의논하는 대상은 한국인보다는 모국인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20〉 해체 다문화가족에게 어려운 일 있을 경우 의논대상

(단위: %, 명)

구분	모국인	한국인
있음	48.8	32.1
없음	51.2	67.9
전체(% , 명)	100.0(117)	100.0(117)

이와 함께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지닌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주변인들과의 모임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학부모, 지역주민 모임의 참여는 각각 65.6%, 71.3%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모국인 친구 모임에도 45.4%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1〉 해체 다문화가족의 모임 참여정도

(단위: %, 명)

구분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주민 모임
전혀 없음	65.6	45.4	71.3
1주일에 두 번 이상	3.9	5.4	7.0
1주일에 한번	3.9	10.5	4.4
한달에 1-2번	9.9	14.9	1.1
1년에 2-3번 이상	9.8	14.8	7.3
1년에 한 번	7.0	9.0	8.8
전체(% , 명)	100.0(63)	100.0(110)	100.0(107)

4)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경험 및 공공부조의 혜택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받는 지원 서비스의 경험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한국 생활의 어려움의 한 요소인 언어습득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0%였고, 한국어 교육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8.8%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경우는 언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지만 과반수 이상이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어 이들은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의 영역에 있어서 가족상담 및 교육경험을 받지 못한 경우가 70.4%에 이르렀고 자녀양육 및 학습 관련 도움에 있어서도 62.7%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원서비스의 경험 부재는 향후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는 작업이 지원센터의 역할로써 중요함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표 3-2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혜택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경험	자녀양육 학습 도움
받은 적 없다	50.0	70.4	62.7
매우 도움이 됨	28.8	9.2	16.1
약간 도움이 됨	13.4	7.6	7.5
보통이다	6.1	6.1	8.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7	6.7	5.3
전체(% , 명)	100.0(114)	100.0(103)	100.0(106)

또한 해체된 가족의 경우 한국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보았을 때 건강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64.4%에 이르러 다른 사회보험들 보다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나 일반 다문화가족의 건강보험 비율이 82.7%에 이른 것 보다는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가입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체된 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부양자로서 취업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3-23〉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사회보험 가입률

구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북 결혼이민자(%)	82.7	12.6	8.5	7.7
이혼·사별(%)	64.4	14.3	9.9	9.9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의 수혜율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 27.3%였고 의료보호는 20.9%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현재 해체 다문화가족의 공공부조 수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수혜율은 11.7~27.7%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북의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기본적인 범주 안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4〉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공공부조 수혜율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의료보호
지원받는 것이 없음	45.7	52.1
지원받고 있음	27.3	20.9
모름	18.4	18.4
무응답	8.6	8.6
전체(% , 명)	100.0(130)	100.0(130)

한편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삶의 만족도를 고찰해 보았을 때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만족 이상이 54.1%로 나타났고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36.4 ~ 41.5%를 차지하여 일반 다문화가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낮게 표시하고 있었다.

〈표 3-25〉 다문화가족 유형별 삶의 만족도

구분	일반(유배우)	이혼·사별	
매우 만족	20.8	8.0	17.1
만족	33.3	28.4	24.4
보통	38.6	45.5	45.5
불안	6.3	12.5	12.5
매우 불만	1.1	5.7	5.7
전체(% , 명)	100.0(5,202)	100(129)	

제 2 절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1. 사례조사

본 연구는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를 분석하고, 이혼, 사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이혼, 사별 등으로 해체를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인터뷰 방법을 통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없는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내적·외적 조건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 심층면접 대상 선정 및 특성

이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우선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찾아보았고 다음으로는 해체위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이주여성쉼터를 통해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이기에 이혼을 통해 해체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이혼보다는 주로 사별한 사례들을 소개 받았다. 반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나 이주여성쉼터를 통해서 이혼소송 중이거나 법적 소송이 완료된 해체가족들을 소개받아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체 20개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3-26>과 같다.

〈표 3-26〉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특성

사례	연령	거주지	국적	국적 취득 여부	결혼당시 연령		초혼/재혼		결혼 연도	이혼/사별연도	재혼 자녀 유무	배우자와의 자녀	현재 동거 가족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1	28	고창	캄보디아	○	20	47	초혼	초혼	2005	이혼 2012		아들(8)	×
2	32	전주	베트남	○	24	43	초혼	초혼	2005	이혼 2006		딸(8)	자녀
3	27	전주	베트남	×	22	46	초혼	초혼	2009	이혼 소송중		×	×
4	50	전주	필리핀	○	39	39	초혼	초혼	2002	이혼 2005		딸(10)	자녀
5	30	전주	베트남	×	24	37	초혼	초혼	2006	이혼 2007		아들(7)	×
6	34	김제	필리핀	×	28	28	초혼	재혼	2008	이혼 2011	아들	아들(4)	자녀
7	37	김제	필리핀	○	22	32	초혼	초혼	1999	이혼 2012		딸(8,12)	×
8	30	익산	베트남	○	23	39	초혼	초혼	2006	이혼소송 2012		딸(4,6)	자녀
9	31	익산	캄보디아	×	25	48	초혼	초혼	2007	이혼 소송 2011		딸(6) 아들(3)	자녀
10	29	익산	캄보디아		25	46	초혼	재혼	2009	이혼 소송	딸(21)	아들(4)	자녀
11	29	전주	네팔	×	25	52	초혼	재혼	2009	소송 준비		아들(5)	자녀
12	29	전주	필리핀	×	23	40	초혼	모름	2007	소송 준비		아들(4)	자녀
13	28	전주	캄보디아	○	23	39	초혼	초혼	2008	이혼 2012		딸(6)	자녀
14	32	전주	중국	○	25	32	초혼	초혼	2006	이혼 2011		아들(9)	자녀
15	28	김제	필리핀	×	21	43	초혼	초혼	2006	사별 2012		딸(6,7)	친정엄마, 자녀
16	29	정읍/ 의정부	필리핀	○	20	33	초혼	초혼	2004	사별 2010		딸(8)	자녀
17	32	무주	중국	○	24	40	초혼	초혼	2005	사별 2013		딸(7)	시부모, 자녀
18	32	무주	베트남	○	23	37	재혼	초혼	2004	사별 2012		딸(8) 아들(6)	시부모, 자녀
19	30	완주	캄보디아	×	24	37	초혼	초혼	2007	사별 2012		아들(3)	자녀
20	48	고창	필리핀	○	30	40	초혼	초혼	1995	사별 2010		딸(16,17)	자녀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사례 대상자를 보면 연령이 20대 중반에서 50대로 다양한 연령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해체된 다문화가족에게 결혼 연령이 다양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연령 차이도 동갑에서 최대 27살 차이를 보이는 등 사례별로 다양한 연령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개 사례에서 1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살 이상의 연령 차이를 보여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크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출신국을 보면 필리핀 7개 사례, 베트남 5개 사례, 캄보디아 5개 사례, 중국 2개 사례, 네팔 1개 사례로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중국 조선족 출신들의 이혼율이 높지만 이들은 이혼을 할 경우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언어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 보다는 떠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이후 증가하는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이들의 이혼, 사별을 통한 해체 비율도 높아져 사례조사에서도 동남아 출신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의 형태는 여성의 경우 1개 사례가 재혼이었고 다른 사례는 모두 초혼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재혼이 3개 사례, 17개 사례가 초혼의 형태였다.

이혼소송중이거나 이혼한 사례는 14개 사례였고 다른 6개 사례는 사별한 사례였으며, 현재의 거주지는 15개 사례가 시단위에 거주하였고 5개의 사례는 군 단위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시기의 거주지는 대부분 군 단위에 거주하다가 이혼소송과 이혼 절차를 거치면서 시 단위에 거주하게 되는 사례였고 군단위 사례들은 사별 사례로 원래의 거주지에 살고 있었다.

자녀 유무는 1개 사례를 제외하고 19개 사례가 자녀가 있었으며 이혼한 2개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였고 1개 사례는 본인의 친정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였으며 나머지 사례들은 결혼이민자 본인들이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경우 자녀 양육자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본인인 경우는 37%로 가장 높게 나온 것처럼 이혼, 사별의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자녀양육자가 본인인 경우가 16개 사례였다.

국적 취득은 현재 12개 사례가 취득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례들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조사를 선택한 이유는 실태조사의 통계 분석에서 파악할 수 없는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당면한 어려움, 지원 정책 수요도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심층면접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면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면담을 통해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통찰해 볼 수 있다.

심층면접의 경우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과 라포 형성이라는 관계 형성으로 많은 사례를 얻기 어렵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구체화된 요구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게끔 단초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대상자별로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전사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면담자료의 수집과 전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답변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심층면접 내용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심층면접의 구성은 결혼에서부터 이혼·사별까지의 전반적 과정과 이혼의 경우 이혼을 고려, 결정하게 된 요인, 이혼 절차상에서 직면한 문제, 이혼·사별 이후의 가족생활과 당면한 어려움 등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와 정책지원의 혜택과 향후 바라는 정책의 요구도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3-27〉 심층면접 내용

항목	세부질문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나이, 본국적, 지역, 가족관계(자녀, 현재 동거하는 사람, 친정식구 등) - 체류자격(국적취득의 여부, 국적 취득은 언제(이혼 이전, 이후)인가?) - 처음 한국에 온 시기, 한국에 온 목적?(결혼, 이주노동 등)
결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전북 지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 결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연애, 중매 등) · 배우자의 나이, 직업, 이전 결혼 경험(초혼, 재혼 : 본인 및 배우자 등) · 결혼시기, 장소 및 결혼과정(결혼식, 혼인신고, 비자취득, 한국입국) · 배우자에 대한 정보(건강, 재산이나 직업 등)
이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이전의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가정형편의 어려움, 부부대화의 문제, 문화적 갈등, 다른 가족관계와의 갈등, 자녀양육 문제 등) · 이혼을 하게 된 가장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 이혼을 결정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이혼 인가? 소송 이혼인가?(구체적인 사안과 절차) · 이혼에 따른 법적 정리 : 체류자격, 재산권, 자녀관련(친권, 양육권, 교섭권) · 이혼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이혼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이후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이혼 직후 어디에서 살았나? 주거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현재 생활비를 어떻게 벌고 있는가? 이혼 전에 한 일이 있는가? 수급자인가? · 생계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움 받을 곳이 있는가? · 현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임신, 출산/자녀양육, 가정교육/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교사와의 관계, 공부 봐주기, 양육비·교육비의 총당) ·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 사별의 원인(질병, 사고 등) · 남편의 사별로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등) · 사별 이후의 법적 정리 문제 : 체류자격, 재산권, 자녀관련 · 사별 이후 시댁과의 관계 부분 · 사별 이후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과 기관은?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과 기관은 있는가? (구체적으로 자국 출신 친구, 한국인 친구,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쉼터 등) - 이혼·사별 이후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 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였는가?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로부터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어떤 지원인지 구체적으로) - 이후 정책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지원은 무엇인가?(안정적 주거, 자녀교육, 일자리 지원 등)

2.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1) 결혼 과정: 결혼의 환상, 잘못된 정보

이혼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 사례에서 20대 초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의 경로를 보면 10개 사례가 중개업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를 통해서가 7개 사례, 3개 사례는 통일교를 통해서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 보고서(김지영 외, 2010; 홍미희 외 2011)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주여성쉼터를 통해 소개 받은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한 사례 들은 대부분 중개업⁵⁾을 통한 결혼 경로를 보이고 있었다. 이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 원인인 무분별한 중개업체의 난립과 맞물려 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제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한국과 한국 생활에 대한 환상으로 결혼한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사례 19〉 그때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 보면 너무 한국이 좋아요. 그래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장가온 삼촌 있어요. 장가와서 신부 만나서 결혼하고. 아, 그러면은 저도 한국 좋아하니까 삼촌 저희 갈게요. 만약에 애기 아빠 만났어요. 방금 만나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더라도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한국은 좀 너무 티비 좋아요, 그냥 갈게요.** 알았어요. 딸 마음 생각하면 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결혼해요.

〈사례 1〉 여기 한국인 친구랑 소개해가지고 갔어요. 그 친구는 진짜 한국 살면서 많이 자랑했어요. 주말에 쉬면 바다나 놀러가고, 자랑도 많이 자랑했어요. **한국 오면 사모님처럼 그냥 집에만 있고 주말에 신랑 같이 놀러가고, 저도 그냥 상상만 해서 댔어요.** 애기 아빠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오고만 싶어 하나니까. 친구들과 내가 한국 와서 남편이 나이 먹어도 나한테 잘해주는 데, 놀러가고 막, 내가 좀 다 하는데, 뭘 걱정하나. 가면 내가 편안한데... 캄보디아는 힘든 거 있잖아요. 한국 오면 나한테 잘해주고 나는 사랑 받고.

또한 국제결혼의 과정이 중개업과 지인, 통일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앞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에 대한 환상과 맞물려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당사자들이 직접 교환하기 보다는 제3자를 통해 전달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된 정보를 지닌 채 결혼하는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의 직업, 결혼 경험 및 가족관계, 거주지, 학력

5) 여성가족부의 조사(2010)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부인을 처음 만나게 되는 방식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가 65.4%로 조사되었다.

등에서 본인이 알고 있던 정보와 차이를 보였고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여성결혼 이민자의 연령, 본국의 가족관계에 대한 오해 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초기 정보의 불일치는 이후 가정생활에서 불신의 싹으로 자라고 있었다.

〈사례 1〉 조사자 : 그럼 00씨가 처음에 그래도 이제 소개해준 분이 남편이 이런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례 1〉 그 분이 좀 이야기 바로, 서로 한국말 몰랐잖아요. 애기 아빠도 캄보디아어 몰랐고, 저도 한국말 잘 몰라요. 근데 애기 아빠가 자기 변명이, 거기 속해있는 사람이 스물다섯 살 아래는 결혼 안 한다고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서로 말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조사자 : 음, 그랬구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이를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러면은 남편이 하는 일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례 1〉 저요? 그때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집 짓는 거? 그냥 사무실에서 만약에 아파트 지으면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희준 아빠가 자기 분명히 농사한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다음으로 시골 내리란 거예요. 저도 왜인지 슬퍼요. 아, 진짜 3일 내내 계속 울었어요. 딱 눈 뺏는데 애기 아빠 어머니하고 밭에 일하고 있어요. 고추, 고추농사 지으면서. 동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신랑, 어머니 이렇게 일하는데, 나 방에만 있다고. 그래서 생각 또 생각. 어차피 한 번 시집왔는데 어찌겠(겠)다고 가서 도와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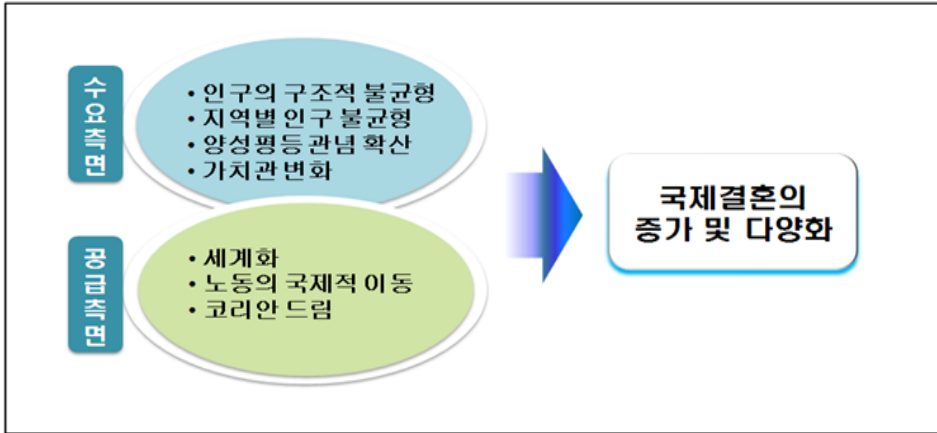
〈사례 2〉 회사 사장님은 다 남자예요. 그사람 사장님이 미워하는 거 몰라. 나쁜 거 몰라. 그냥 막 다 좋은 거 얘기해. 그럼 그냥 결혼하면 나이 얼마, 얼마 얘기 안 해. **그냥 나이 많다하면 작게 이렇게 알려줘. 한국 오면 알아요.** 다른, 한국말은 못했고, 한국 사람은 베트남 말을 못했고. 베트남 사람은 한국말을 못했고. 두 명은 회사, 회사 사장, 사장은 얘기하고, 옆에는 동료 있고. 이렇게 하고, 근데 남들은 몰라요.

〈사례 5〉 따로 사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어차피 결혼을 해서 어쩔 수 없고 그냥 내 운명이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자. 애기 때문에, 애기 생각하면. 근데 한참 후에는 어떤 친구가 와서, 베트남 친구 거기 많아요. 와서 저는 물어봤어요, 물어봐. **우리 신랑은 예전에 뭐 결혼도 했냐, 물어보더니, 물어보고 알아요. 스물 여섯 살 때는 큰 교통사고 났대요. 머리가 좀 정상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자꾸 화가 나고 같이 못 살 것 같았어요.**

〈사례 3〉 신랑이 처음부터 조금 술 마시고 하루에 또 술 마시고 일도 가끔 하고, 점점점점 술 많이 마시고 일도 안 나가요. 아예 안 나가요. 일하는 사람이 전화와요. 일하러 오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어요. 술만 마시고, 자꾸 저 나가라고. 애기 있다고. 결혼식 하는데 언니 얘기 있어요. 그때는 애기가 4개월인데, 우리 조카 4개월이에요. 제가 안고 결혼식 하는데 안고. 신랑이 조카를 제애기로 보고 자꾸 나가라고 술만 먹으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과정은 국제결혼이 진행되는 메카니즘 하에서 결혼에 대한 개인적 욕구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환상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중개업과 지인, 통일교 등의 경로를 통해 들어오면서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국제결혼 과정에 들어오게 된다.

〈그림 3-1〉 국제결혼의 메커니즘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중개업을 통한 결혼은 여성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남편의 성격, 건강, 학력, 직업, 경제력을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은 그 정도의 조건이면 결혼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 시기로 현제 소송중이거나 이혼을 한 유형들은 중개업⁶⁾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2000년대 중반 시기에 결혼한 유형들로 제도적으로 제재가 되지 않는 시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의 초기부터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다.

2)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 그리고 이혼 과정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들은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이 64.4%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과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6)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은 1973년의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99년 2월 8일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다. 결혼중개업종의 자유화 조치 이후 결혼중개업소 및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에 대한 결혼중개서비스가 부실하게 되는 과정이 도출되면서 결혼중개업에 대한 신고제의 부활의견 수렴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국제결혼의 이원화로 귀결되다가 2010년 11월 18일부터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의 신고, 등록업무를 시·군·구청으로 단일화하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도 부여하였다. 이 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준의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불안정성과 함께 배우자의 음주 문제, 그리고 폭력이 동반되면서 결혼 생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사례 8〉 네, 남편이 농사해요. 여기에 와서 농사 못해요. 그 사모님 동네, 그 이장... 다 해줘. 오빠 농사만 못해요. 은숙이가 농사하고. 남편 시내 나가. 은숙이가 '오빠 농사 같이해.' , 은숙이가 농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오빠가 너 죽고싶냐?' , 그렇게 오빠가 이리하면 싫어요. 요즘 은숙이는 농사... 처음에는 농사했고, 다 하면 은숙이 회사 다녀. 그 시숙님하고 고모들 집에 와서 은숙이 직장 다녀. 돈 어디에 있냐고. 은숙이 돈 얘기를 유치원 다니고. 뭐 사면 돈 다... 오빠, 엄마 돈 없잖아. 엄마 병원 가면 은숙이한테 '돈 줘.' , 또 돈 남아?' , 이라고 '갖고 와.' , 안 갖고 오면 은숙이 때리고, 고모들, 시숙님 은숙이 꺼 다 가져가. 은숙이 이혼하고 싶어서, 은숙이 여기 못 살아서 이혼해주세요. 이혼하고 싶으면 천이백만 원으로 가. 얘기를 싹 빼. 은숙이 베트남 보내요, 돈 천이백만 원 있으면, 계속 그렇게 은숙이 어디 나가면 못 가요.

〈사례 1〉 애기 태어나고 나서 힘들어지는 거죠, 웬지.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렇게 느끼는데, 한국말 모를 때는 아무도 별로 신경 많이 안 썼는데... 애기 낳으면 관찮겠(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랑이 자꾸 술 먹고, 술 먹고 밤에 늦게 오고하면 또 시끄럽게 되고, 만약에 결혼하면 얘기가, 부인 있고, 집에 부인 있고, 배 안에 애기 있으면 좀 부인 위해서, 애기 위해서 뭐 하나 해야겠다, 그럼 남자가 되는데... 그냥 험령험령 생각 없이...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주 걸렸다가 또 뭐 했다가, 신고 보냈다가, 신고 따냈다가 벌금 내다가... (웃음) 어떻게 하다 보면 화나죠, 저도, 막 몇 번 같이 못 산다고 했어요.

〈사례 11〉 농사도 안 짓고 나라 수급자예요. 하는 일은 인력. 어, 사이는 매일 일주일 술 먹고, 술 먹고 저한테 아무리 뭐야... 이유 없이 그냥 와서 '밥 줘.' 만 하고... 밥도 잘 해줬는데 그 상으로 저한테 던져서 때리고 그리고 항상 술 깨고 나서 '당신 왜 술 먹고 왜 날 때려?' 그러면 '너 나가, 너 여기 살 수 없어. 애기 놓고 가.' . 처음에 제가 남편이랑 두 달? 3개월 정도 살다가 술 먹고 때려서, 그때 애기 생겼어, 저한테. 오자마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도 때리고, 가라고만 해서 그래서 전화했어. 가라고만 해. 무슨 말, 아무 것도 몰라요. 오빠가 때려요. 데려가만 해. 나가. 밖에 던져. 그래서 우리말로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결혼해줄 사람한테 전화...살다가... 제가 거기에서도 네팔 통역사람 남편이 술 먹고 한 번 들어가. 통역 사람이랑 들어가서 남편도 다시 술도 안 먹고 안 때리고...

이혼하거나 현재 이혼소송중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를 보면 결혼생활의 위기를 맞으면서 가출, 쉼터 입소, 다시 가족 복귀, 또다시 재가출하거나 쉼터를 찾은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대부분 결혼 초기에 임신한 사례들로 임신한 과정에서의 언어와 물리적 폭력, 남편의 음주 문제,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단 가출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이주와 함께 평생 쌓아온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유리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폭력을 저지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위의 지지 세력을 결여하고 있는 만큼, 무방비 상태로 각종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폭력에 직면한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 일단 폭력이나 배우자의 가출 중용 과정에서 주변의 도

움이나 경찰서에 연계되고 쉽터로 입소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사례 4〉 그렇게 했잖아. 내가 이야기했었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통일고 나가잖아.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도 술 마셔. 진짜 이야기도 못해. 그냥 다섯 시에 나갔을 때, 근데 열 시나 열한 시에 들어왔을 때 취해있어. 내가 5개월인가? 너무 힘들어서 임신 때 5개월인데 집을 나왔어. 친구들이랑 한 달 동안 왔다갔다 친구들이랑... 쉼터 아직 없어.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만... 그때는 너무 힘든 경우는 친구는 마음 받아하고 있는데, 근데 시어머니는 진짜 깡깡해서 힘들어. 다시 돌아왔어. 근데 그날은 왔다갔다... 남편은 그대로 술 마셔. 돌아왔을 때 그대로 했잖아.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돈 아무 것도 안 줬어. 술먹고 폭력해서 많아. 폭력도 그 뭐야. 폭력도 아니고 그냥 싹.목을 조르고, 당시 나는 아기 10개월부터 일을 나가도 아이는 시어머니가 보고 그래서 다시 쉼터로 가서 이혼 소송을 했어

〈사례 2〉 그러면, 제가 임신 2개월? 임신 2개월 되면, 3개월, 2개월 되면 막 배 많이 아팠어. 안 되면 못 먹고. 그냥 누워있고. 그러면 2개월 인 것처럼 행동하면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저 때렸어. 제가 나가면 양말만 신고 신발은 안 신고 그냥 이렇게 뛰어가면 바깥에 약간 비와 시내면 내려주고, 시내에 내리면 너 남편 이름 뭐냐고 하면 저 안 알려주고 그냥 시내 놓고 갔어. 삼례시장 놓고 가면, 경찰 선생님이 보면 생각나. 뭐하면 있어. 그러면 판북동(?), 진북동에 가면 제가 잘 몰랐는데, 그 1366 그거 데리고 오는 거 있어. 데리고 오면, 여기 오면 통역 있어. 제가 여기 오면 이틀? 밤에 이틀, 3일 동안은 남편 와. 원장님이 남편한테 뭐하면 연락하고 약속하고 오면, 남편이 약속했어. 여기 오고 약속도 쓰고, 복사하고 오면, 자기 하나고 복사 해놓으면 원장님 하나 있고, 저한테는 좋은 거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남편은 약속해놓으면 저 다시 데리고 가죠. 일주일 밖에 없었어. 근데 또 똑같아.

〈사례 8〉 그 결혼상담소 엄마 몇 번 와서 엄마가 직접 말해서 '은숙이 또 때리면 베트남 보내요.' , 지금 은숙이 때리고 하면 상담소 엄마가 데리러 와줘서 오빠가 칼 갖고 오라고, 은숙이 목 자르라고, 목 잘라서 베트남 보내요. 집에서 계속 은숙이 때리고, 베트남 안 보내려고. 그 시숙님, 오빠가 아침부터 은숙이 막 때리고, 가라고, 은숙이 어디 갈 데 없어. 그 상담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은숙이 도와줘. 안 될까요? , 엄마가 '왜?' , 애기 아빠가 요즘 은숙이한테 칼 갖고 와, 목 자른다고 그러고, 또 때리고 나가라고, 애기들 엄마가 계속 욕해, 큰 소리로 은숙 요즘 못 살아서 엄마, 오빠가 칼 갖고 왔고, 은숙이가 카메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서 은숙이한테 전주 1577에 은숙이 전화하고 사람 데리러 가. 은숙이 돈 없고 못 가. 계속 언니가 저기 센터한테 전화해, 은숙이 보내주라고.

〈사례 9〉 지금 많이 때렸어요. 계속. 저번에는 쉼터에 전화해서 한 번, 두 번 가봤어요. 그럼 사과하고 다음에 약속도 했어요. 다음에 안 그래. 술도 안 마시고, 뭐 다 안 해. 욕도 안 하고, 뭐 의심하고 그런 거 약속을 쓰는 것도 많이 있어요.

현재 폭력이나 가출을 중용받고 이혼위기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위기지원체계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면접을 통한 사례들을 보면 폭력이나 배우자의 가출 중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 3〉 그랬더니 신랑이 자꾸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고. 베트남에 보내준다고. 재 좀 보내라고 그랬대요. 너무 그렇게 해서 내가 집도 나가고... 저녁에 그냥 시골 와서 사는데, 신랑이 또 그래요. 또 보내려고 자꾸 그렇게 해요.네. 그래서 그때는 한 번 나가고 어디 가야할지 몰랐어. 시부모님 농사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농사도 하고 일 좀 하고 저녁에 왔어요. 집으로. 또 다음에 또 그래요. 또 나가라고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가방 끌고 다니는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처 할머니들이 저보고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서 앉으면 위험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나쁘다고.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머니 자꾸 그렇게 하는데, 집으로 가는지, 제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할머니가 들어가서 자라고.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그 분들이 저한테 경찰서까지 태워줬어요. 좀 있다 와서 상담도 좀 받고. 좀 상담 좀 받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쉼터 해줬어요.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보내주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자꾸 그랬대. 집에 와서 신랑이 처음부터는 조금 술 마시고 하루에 또 술 마시고 일도 가끔 하고. 점점점점 술 많이 마시고 일도 안 나가요. 아예 안 나가요. 일하는 사람이 전화와요. 일하러 오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어요. 술만 마시고. 자꾸 저 나가라고.

〈사례 12〉 조사자 : 또 뭐가 있었어요?

사례12 : 왜냐면 얘기 있어. 얘기 태어나서 맨날 얘기 욕하고.

조사자 : 얘기한테 욕해요?

사례12 : 네. 죽으라고... 얘기도 아팠어. 죽으라고 병원 가지 말라고.

조사자 : 아프면 죽으라고?

사례12 : 얘기도 때리고...

조사자 : 에바씨도 때렸어요?

사례12 : 때렸어요. 얘기 3월 달? 얘기 많이 때렸어요. 3월달에... 많이 때려서 그냥 참아. 그냥 참고.. 경찰에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기도 뺏어.

조사자 : 전화기도 뺏어버려? 그래서 참다. 참다가 결국은 이혼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례12 : 네.

실제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24시간 Hotline을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직접 지원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 직접적인 위기개입 상담(내방, 출장, 전화상담), 긴급구호서비스, 법률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통번역서비스 등 다각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 중앙센터와 6개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의 문제는 야간상담이 중앙으로 연결되어 직접적 폭력 피해 상황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10시 이후 이루어지는 야간 전화 상담에 있어서 2012년 통계를 보면 중앙센터에 들어오는 상담의 비율이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 비율에 있어 호남권역이 1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직접지원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야간상담 강화는 이후 위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위기체제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1577-1366’은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의 결혼이민자대상 현지사전교육(Pre-Departure Program)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정폭력, 가족학대, 차별 등 문제발생시

‘1577-1366’을 대표적 상담번호로 소개하고 있기에 인지도의 측면에서 위기지원체
계로 자리잡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례 10>의 경우 폭력 상황에서 가출을 하
였을 때 먼저 ‘1577-1366’을 통해 상담을 하고 쉽터를 연계 받은 사례이다.

쉽터 관계자 : 2012년 11월 달인가? 1577-1366 통해서 왔어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연락이 났고. 경찰서에서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조사자 : 그럼 언니가 알고 1577-1366으로 전화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례 10> : 제가 전화했어요.
조사자 : 00씨가 전화했어?
<사례 10> : 네.
조사자 : 1577-1366 어떻게 알았어요?
<사례 10> : 제가 알아요. 차 번호 있어요. 그리고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조사자 : 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런 1577-1366을 보고 본인이 전화를 했구나. 남편이 이렇게 때리고 이래서
못 살겠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혼위기나 이혼소송 중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혼에 따른 일상생활,
가족관계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쉽터, 이주여성긴급지
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제공받고 있지만 시기별로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면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사례 14> 의 경우 이혼 소송을 갖추었으나 자녀양육권의 문제로 갈등을 하다
가 이혼 소송을 취소하고 다시 가족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으로 다시
갈등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기지원체계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
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적극적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없었다.

<사례 14> 애를 안 준다는 것이 더 두렵더라고요. 이혼까지 하려고 이혼 서류까지 했는데 애 때문에... 이렇게 그
때 당시에도 국적이 안 나오니까 만약에 소송을 하면 애를 엄마가 키울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래서 그게 좀 두렵더라고요. 같이 남편하고 같이 산다는 건 싫지만, 애하고 또 떨어져 산다는 건 그거
는 또 애가 뻥히 아빠가 어떤 사람인 거 아는데... 그런 아빠한테서 같이 살게 한다는 게 조금 어렵더
라구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혼 소송한 걸 취소를 하고 5개월 만에 다시 집을
들어갔어요. 집을 들어가 갖고 한 6개월까지는 잘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잘하는데 또 다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번 남편한테 맞으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경
찰서에 가도 경찰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시라고, 들어가시라고. 그 과정
을 거치면서 너무 힘들고 다시 이혼과정을 거쳤어요.

이와 같은 현실은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해체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과반수 이상이 의논 대상이 없음을 답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되고 있었
다. 따라서 이혼 위기나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시기적절한 지원체계
의 수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닥친 불행 : 질병과 사고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

다문화인구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다문화 사망자는 1,557명으로 전체 사망자인 257,503명의 0.6%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망자 중에는 남성이 1,154명이고 여성이 348명으로 남성 사망자의 비율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의 기본 연령차인 9.5세를 고려해 보면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가족해체 과정을 거친 가족들이 증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평균 결혼 연령의 차가 11.4세로 다른 지역보다 연령차가 많아서 배우자의 사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의 사별 사례들도 질병과 사고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사례들이다.

<사례 19>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때 애기 아빠 있을 때 좀 많이 도와주니까 같이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애기 아빠 돌아가고 다음에는 좀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또 싸우면 나가라고 하고, 또 생각하면 많이 힘들어요. 네. (울먹거리며) 그때 애기 아빠 있을 때 잘해주고 애기 아빠 없어서 시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싸우면 '너만 나가.' 하고, 근데 전 어디에다가, 저는 집 없잖아요. 한국에 와서 애기 아빠만 희망이었고요. 지금 애기 아빠 돌아가고 너무 힘들어요. 보험은 다 그때 애기 아빠 아파서, 자주 아프니까 보험 다 나갔었어요. 또 다음에는 애기 아빠는 결혼받지나 있잖아요. 좀 저기 한 거 이사 와서 할머니가 다 뺏았어요. 저는 애기 키우는 거, 저는 놓고 온 것도 없어. 나머지 애기 아빠 어항, 물고기 키우는 거 요리사잖아요. 할머니가 다 뺏았어요. 어려운 거는 좀, 제일 좀 애기 아빠 없으니까 혼자 앞으로 어떻게 애기 키우는가... 돈은 빨리 저금도 하고, 문제는 애기 아빠 없어서 너무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또 돈 걱정도 하고요. 네

<사례 20> 조사자 : 아니, 그러면 뭐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례 20: 공장에서... 두 명, 한국 사람 돌아갔어. 열한시 반인가? 이렇게. 몰라. 일주일 동안 병원. 근데 일주일 기다리다 이제 없어. 하나는 며칠 만에 돌아갔어. 또 여기 고창 와서 3일 날 우리 남편 돌아갔어

<사례 17> 근데 아직 시부모님이 나가라는 말은 안 하고요. 아직 살고 있어요. 왜냐면 미정이라도 누가 다 돌봐줘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근데 아직 나중에 어떻게 할지 아직 몰라요. 근데 아직 괜찮아요. 아직은 같이 살고 있고...

<사례 20>처럼 배우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은 산재보험 등의 처리로 보상금을 받는 유형으로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시댁과의 관계가 얽히고 시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시부모와 동거를 하지만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 등으로 갈등 상황을 맞게 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생각은 가족(한국인 남편)의 배우자라기보다는 일꾼이나 보모 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다수 존재하기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은 시댁에서 결혼이민자 자신의 위치를 자리

잡을 수 없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시댁과의 관계,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확정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사례 19>는 배우자의 사망 이후 같이 동거해 온 시어머니의 횡포로 결혼반지까지 빼앗기면서 쫓겨나오듯이 시댁에서 나오게 되어 주변의 도움으로 모자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나마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한편 <사례 16>처럼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 계획을 세우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 재혼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보다는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는 사례들이 나타나 다문화가족 유형의 다양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사례 16> : 아, 그때 남편이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2년 뒤에 2012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제가 이 남자 친구가 1년이 됐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남자친구가 좀 마음이 괜찮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남자친구도 좀 나한테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는 것도 가끔이지만 근데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결혼하는 거 생각했는데요. 선생님. 근데 돈 벌어서 결혼하려고 생각했거든요? 똑같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우리는 좀 돈 벌어서 결혼하려고요. 결혼하는 거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아이한테 잘해주고 아이도 따르고 해서 돈 모으면 곧 결혼할 생각이예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사망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져온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가교가 없어지게 되는 과정이다. 즉 남편을 통해 형성되었던 관계망이 급격히 쇠퇴해지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도 흔들리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고립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이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에 비중이 크고, 가족 외부와의 관계도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며, 기본 축인 남편의 부재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녀양육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가족관계의 끈도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4) 이혼·사별 이후 삶의 고단함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은 주거 공간이었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였다. 앞서 실태조사에 나온 바와 같이 배우자가 있던 경우에도 경제적 취약 계층이었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한국의 한 부모가족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원가족의 지지가 거의 없는 한국이기에 이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① 주거문제

이혼의 경우에는 당장 본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사별의 경우 배우자와 거주하던 곳이 안정적 거주지이면 머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나 시댁과 동거하던 중에 갈등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이면 당장 거주지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이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재 주거지에 대한 질문에서 20개의 사례 중 5개의 사례는 쉼터에 머물고 있었으며, 일터에 딸린 숙소나 여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3개 사례,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사례들이 7개의 사례를 보였다. 한편 사별의 사례 중 시댁에 거처하는 사례가 2개, 모자원 거주 1개 사례, 자가가 2개 사례로 나타났다.

〈사례 6〉 아노. 먼저 친구한테. 먼저 저쪽으로 여관. 한 1년을 거기에 있었어요. 여관에서. 이십만원.

〈사례 7〉 지금 불편한 점. 제 생각은 집... 돈 모아서 다른 집으로... 여관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참고 있어요. 돈 모아서 나중에 다른 집 알아보려고. 애기가 만약에 집에 왔어. 그럼 애기가 보는 집은 안 좋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사례 12〉 걱정이 있어요. 어디서 살아야 할지...

〈사례 4〉 아니. 우리 지금도 원룸 있어요. 원룸하고 그...백만 원, 십오만 원. 근데 십오만 원, 지금 십오만 원은 주인한테 내가 청소하고, 청소하고 그때는 십오만 원 안 줘도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해요. 안 내도 돼. 지금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했거나 일반적으로 가출을 중요 당하여 이혼하거나 소송 중인 사례들은 쉼터나 임시거처에 머물렀고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었으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혼이 완료되어 쉼터나 임시거주지를 나와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례들은 월세를 얻어 나오게 되는데, 월세의 경우에도 당장 몇백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례 4>의 경우에는 살고 있는 원룸 계단 청소를 하여 월세를 해결하는 경우였고,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은 쉼터에 거주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 경제적 활동으로 보증금을 마련하여 나오는 경우들이 존재하였다. 사별의 경우에도 시댁에 우선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남편 부재 이후 시부모와의 갈등이 분출되어 나와야 되는 경우는 주변의 도움으로 모자원을 찾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혼이나 이혼소송, 그리고 사별의 사례 중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장 부딪히는 문제는 불안정한 주거문제였다.

②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도 나온 바와 같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특히 이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결혼초기부터 경제적으로 열악한 배우자에 따라 힘든 삶을 꾸렸지만 배우자의 부재는 이들의 더욱 빈곤 상황으로 몰리게 한다.

이혼 및 사별 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전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위자료나 양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취업능력과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전일제 일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례 다수의 여성들이 기초수급이나 임시직 등의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사례 2> 험터에 있을때 2년 동안은 수급자 나왔어요.. 생활비는 다 주고 밥 뭐..지금 수급자는 총 삼십만 원, 삼십오만 원 나와요. 수급자 비용이랑 일해서 벌어서 팔십오만 원 갖고? 삼십만 원 집세 내고 오십오만 원에 사는 거예요. 보증금 봐준 거는 기간 정해졌어요. 옷 공장 아침에는 아홉 시에 하고, 저녁에는 다섯 시에서 세 시는 그렇게 있어요. 다섯 시에 오고. 애기 된 일 있으면 또 쉬고, 학교 나가고 하면 학교 문자하고 병원가면 또 쉬고, 그러면 돈 많이 안 받아요.

지금 돈 많이 안 모아서 너무 걱정이예요. 여기 집주인은 회사는 같이 다닌 적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돈 없고 하면 기간은 올려주고... 그러면 여기 나오면 3년 뒤에 집 먼저 하고, 집 있어야 되는데, 돈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애기 키울 돈 있고 살 돈 있고, 그러면 집 없고 돈 없고 그러면 진짜 못 살아요.

<사례 4> 집을 나와서 험터에 있으면서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닭발공장 사십만원 일이 힘들고 해서 여기는 1년도 안 있고, 그 닭발 공장은 세 달인가? 세 달.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아파. 부었어. 닭발 공장 다녀서, 그때부터 내가 친구들이 소개해줘서 옷 공장도 팔복동에서 옷 공장 다녀요. 옷 공장도 오십만원? 오십만 원 받아요. 지금은 다문화센터에서 120만원 받아서 원룸에 월세내고 아이랑 살아요

<사례 9>

조사자 : 그리고 험터에 와서 일을 좀 하고 있고, 돈은 좀 모았어요?

사례 9 : 조금 모았어요.

조사자 : 얼마 모았어요? 1년 동안?

사례 9 : 그냥 이백만 원 정도? 왜냐면 일 한 달에 오십만 원 정도...네. 없었어요. 그때는 한 이백?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모아가지고 집 보증금 내야 되니까. 보증금 내고 월세 내니까. 없어. 전혀. 한 백 넘을 걸? 식당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거의 24시간 하니까, 하루에 한 한 시간 삼십 분, 두 시간, 세 시간 잘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지금 한 시간만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그냥 온 거예요.

다문화험터에 있을 때 보호 차원에서 그게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와 버리면 그게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일반도 그럴 것 같아요. 애 둘 사는 부모 같은 경우도. 근데 또 그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리 이러한 가정이 힘든니까 지원을 해주면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애를 키우면 할 수 있는 저기도 절다는 이유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절으니까 조건부, 조건부로 되더라고요. 외국에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나 살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좀 정부에서 집이라도, 일은 생활을 하는데 집이라도,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큰 것도 아니고 진짜 자그마한 집이라도 내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면... 솔직히 돈 벌어갖고 내가 생활하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20개의 사례 중 이혼이 완료된 사례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격⁷⁾ 확보를 얻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지만 수급요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수급액이 삭감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⁸⁾.

7)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시행 초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조항이 없었으나 2005년 12월에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였다.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이다. 2011년 6월까지 3,100명이 지원을 받았고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외국인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현재 해체 다문화가족의 공공부조 수준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 수혜율은 11.7~27.7%로 상당히 저조하여서 다수가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인 기초생활 수급의 유지는 한편으로 이들에게 적극적인 취업 욕구와 자립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딜레마로 작동되고 있었다.

③ 자녀양육 및 교육

이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취업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앞서 본 실태조사에서 이혼의 경우 사별보다 한국 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으로 뽑는 것이 자녀양육이었던 것과 같이 이혼 소송을 하여 가족해체위기에 있거나 이혼이 완료된 사례들은 자녀양육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사례 2〉

조사자 :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와요?

사례 2 : 아침에는 아홉 시에 하고, 저녁에는 다섯 시에서 세 시는 그렇게 있어요.

조사자 : 응, 근데 애기 때문에 아홉 시에 가서 다섯 시에 오는 거예요?

사례 2 : 다섯 시에 오고, 애기 뭘 일 있으면 또 쉬고, 학교 나가고 하면 학교 문자하고 병원가면 또 쉬고, 그러면 돈 많이 안 받아요.

조사자 : 그러니까 오십만 원 벌어서 그러네... 그러면 이혼 직후에는 쉼터에 살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비용 받아서 나와서... 애기 어렸을 때, 지금은 커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례 2 : 어리면 똑같아, 그렇게. 어리면 제가 오십만 원, 옛날 애기 어리면 사십만 원 받아요, 수급자 돈, 삼십만 원 받고 애기는 어린이집 보냈어. 애기 어린이집 열 시에 보내고 네 시, 다섯 시에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열두 시에는 일하고 세 시에는 집에 들어와, 그러면 한 달에 총 이십만 원, 삼십만 원 더 받아, 이십만 원, 삼십만 원 그렇게 받으면 살고, 반찬은, 애기 우유 먹고 있잖아, 우유 먹고 집세 내고, 수급자 돈 나오면 전기세 하고 가스비 하고 물세 하고 그렇게 하고, 애기는 옷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돈 다...

〈사례 17〉 일단 생활비 같은 것도 해야 돼서... 그리고 또 oo이는 지금 좀 크잖아요, 피아노 학원도 다녀야 되고, 아니면 국어 학원... 특히 국어, 아이 때는 제가 가르칠 수 있지만 근데 아직 언어가 약하잖아요. 학습지든 선생님 있어야 애가 제대로 배우는데, 저한테 배우면 좀 그렇잖아. 아빠 있으면은 그냥 아빠가 어떻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데, 제가 읽어줄 때도 가끔씩 발음 안 좋은 것을 애가 또 따라서 하더라고.

이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례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면접권을 얻어서 자녀를 돌보는 사례들도 있었다. <사례 1>의 경우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합의이혼을 하였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자 원래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거주지가 불안정한 본인보다 아버지와 할머니

니가 있는 본가에서 아들이 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으나 아들의 교육과 치료에 도움을 못 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취업 활동을 통해 일정 정도 돈을 모으게 되면 아들을 데리고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7>의 경우도 이혼을 통해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면접권을 얻어 아이들을 보고 있었으며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자녀들을 데려 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1> 그런 부분이 애기 이혼할 때, 애기 아빠는 애기 저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애기 주면 저는 돈 아무 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시집도 없고 애기 키우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는 집이 있으니까, 아마도 아빠랑 있는 게 더 낫겠죠. 제가 데려가면 저 집도 없고, 애기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일주, 여기서 다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애기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애기는 잘 키우는데,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애기 데리러 오는 거로 이야기...지금 또 하면 애기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권 없어요. 집도 없고.

저요? 애기는 빨리 데려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잘 안 돼서... 돈도 열심히 모았는데, 돈도 잘 안 모아져요. 꾀, 한 번 쓰면, 외출 한 번 하면 오만 원, 십만 원 그 정도 써지니까, 자꾸 돈도...

<사례 7>

사례 7 : 집에서 나와서.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나도 애기, 막내딸 키우는데 어린이집? 애기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다 했는데요. 근데 남편 말로만 이십만 원 한 달에 줬는데요. 근데 말만, 말만 해요. 돈 안 줘요. 너무 어려워서,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아침에 회사 출근... 너무 힘들어서 제 생각은 막내딸 보냈어요. 근데 필리핀에 나랑 애기랑 필리핀 갔을 때 한 달 한 달 그런 거... 필리핀 2년 사는데, 큰딸 아니 막내딸? 2009년에 다시 필리핀 갔을 때 데리고 왔어. 다시, 애기가 바로 왔는데, 법원에 가서 서류가 정리되고, 남편이랑 애기해서 애기 둘 키우라고, 애기를, 남편 만났어요.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애들 만나요. 네. 그냥 집에 와서 애들 잘 안 키우는가봐. 애기 보면 가슴이 아파. 네. 애기 아빠가 애들 데려갔어요, 혼자. 나도 애기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근데 월급 적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조사자 : 그러니까 아기가 가장 걱정됐죠?

사례 7 : 네. 애기 키우는데, 하고 싶어서 키우는데요, 근데 그때 법원에서 애기하는데요. 남편 월급 받잖아요. 저 월급 적고, 애기 아빠가 키우라고. 근데 할 수 없어요.

조사자 : 키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례 7 : 네. 애기 아빠가 애들 데려갔어요, 혼자. 나도 애기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근데 월급 적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조사자 :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사례 7 : 남편이랑 나랑 조금 관찮은 애기는 애기 때문에... 제가 보냈어요. 애기 아빠한테. 그냥 지금 애기 아빠가 애기 잘 키우라고요. 나중에 제가 돈 모으면 아이들 키우고 싶어요.

한편 이혼이나 사별 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생활 동안에 부부갈등, 폭력 등의 문제와 급작스런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제대로 된 언어교육을 받지 못하여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며 자녀 양육과 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었다. 대부분 한국 생활이 5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와의 심층면접에 있어 질문은 알아들었지만 말하기 능력이 떨어져 대화 소통에 있어 상당히 어려웠다. 일부 사례들을 통역자를 동반하여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사자 :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사례4> 생활에 어려운 거는, 가장 어려운 거는 학교요. 지금 3학년이니까 숙제 이런 거는...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도 내가 혼자 일하고 민지 챙겨. 그때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는 경우는 내가 또 지금 그 뭐야. 상담원이었으니까. 다 여러 가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사례 11> 모아놓은 돈 없어요. 그리고 애기 언어도. 제 아들 조금 늦었어. 그것도 너무 걱정되고. 앞으로 학교 들어갈 때 엄마 외국인이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조사자 : 그렇지. 그런데다가 지금 애기가 1학년인데 엄마가 공부나 이런 거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겠다.

<사례 2> : 엄청 많다.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은 제가 공부하는 시간, 지역아동센터 들어가면 공부도 되고. 저기 중앙 다문화센터 들어가도 공부 돼. 그거 공부 들어가면 돈 어떻게 해요. 사람 일 못하는데 어떻게 살고.

현재 해체된 다문화가족으로 한부모 다문화가족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있었다. 자녀들이 한국인이기에 한국에서 성장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본국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수급이나 임시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비의 부담은 컸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 후 전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원 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례 11>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한국에서 애기 키우고 싶어요. 우린 한국 애 이고 근데 돈이 없어서.

<사례 12> 애기 때문에.. 필리핀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돈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육 별로고 우리 애는 여기에서 태어났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사례 13> 이주 여성들에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힘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도움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일자리도 월급 적으니까 좀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애기 데리고 있잖아요. 애기 교육이 제일 걱정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더 알아봐야죠. (웃음) 지금은 모르지만..

④ 체류권의 문제

이혼이나 사별의 과정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서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은 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이다. 자녀가 없고 이혼소송중인 국적 미취득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재판이혼 소송을 하여 이혼의 귀책사유를 배우자에 물어 체류자격을 받고자 하였다.

한편 국적 취득 상황에서 이혼하여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하면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례와 달리 국적 미취득자일 경우 면접교섭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부모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변경사항이 요구되고 있다.

국적취득을 못하고 이혼을 하고 자녀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현 출입국관리국의 체류관리 지침에 의해 이혼 후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 제반사항 정리를 위해서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 소멸시까지 3개월씩 체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체류자격 없이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는 경우는 이와 같은 지침에 의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다. 여기에서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국제결혼의 이혼 사유가 남편의 폭력 또는 경제적 무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은 여성결혼이민자인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자격을 보장함으로써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례 3〉 남편이 합의이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싫어요. 근데 만약에 합의이혼하면 제가 바로 가니까. 재판 이혼하면 남편이 저를 때리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게 보고 만약에 제가 한국에 남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자료는 진짜 제가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많은 사람이, 내가, 물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돈 때문에 오잖아요.아니, 근데 한국 사람이 무조건... 우리는, 우리 보러 돈 때문에 한국 온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그럴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돈도 벌어서 엄마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이혼하고,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제가 싫어해요. 아는 사람이 저보고 왜 돈을 안 받았냐고. 제가 야간도 하고 힘들게 일하고 돈 갖고 싶지 않고, 힘들잖아요. 근데 왜 위자료 안 받냐고. 아냐, 안 받아. 안 받아. 절대로 안 받아.

〈사례 7〉 아니. 데리고 왔어. 필리핀 들어갔어. 애기가. 근데... 어, 뭐지? 남편이랑 나 한 번 이혼 서류 하고 저희 남편한테 연락했는데요. 어떻게 하나, 얘기해서 법원 가서 이렇게 법원에서 만나서 법원에서 이야기 하는데 애기가 한국으로 다시 와야 돼요. 애기가 불법으로 있잖아요. 2009년에 다시 필리핀 갔을 때 데리고 왔어, 다시. 애기가 바로 왔는데, 법원에 가서 서류가 정리되고, 남편이랑 얘기해서 애기 둘 키우라고. 애기를,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애들 만나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사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이귀화의 형식을 받지 못하고 일반귀화 시험으로 국적을 취득해야하고 이 경우 국적 취득이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 19〉
 조사자 : 그러면 지금 2007년이면, 2013년이면 왜 국적 신청은 안 했어요?
 사례 19 : 지금 애기 아빠 돌아가고 한 6개월 후에 신청했어요. 근데 국적 댔는데, 두 번 시험 보고 두 번 떨어졌어요. 그 출입국사무소에 물어봤는데, 애기 아빠 없는 사람이 시험이 더 어려워요. 문제도 많아요, 많이 물어보고, 다른 사람 애기 아빠도 있고 문제는 많이 안 풀어요. 저 애기 아빠 없으니까 문제는 어려운 거 나와요.
 조사자 : 그니까 그 이야기 맞는 거예요. 그니까 간이귀화, 그걸 간이귀화라고 얘길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문제를 하는 거고, 지금 엠론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험하고 똑같이 치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이거는 출입국에 좀 물어봐야겠다. 제가 한 번 문의를 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지를... 자격이 되는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엠론씨 같은 경우는... 간이귀화 자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번 물어봐야겠다. 그럼 시험 두 번이나 떨어진 거네요, 그러죠?
 사례 19 : 네. 또 신청하면 십일만 원 들어가고, 또 두 번째 십일만 원 내렸어요. 다음에는 언제 시험보고... 아저씨가 그냥 2년 후에 오래요, 2년 후에요. 다른 사람은 또 '엠론 언니는 애기 아빠 없으니까, 애기도 있으니까 시험 안 봐도 돼. 또 국적 나하고 똑같아.' , 안 그래. 나는 시험 두 번 떨어졌는데... 다음에 또 2년 다음에 시험 꼭 받으라고, 어떻게 만약 그러면 좋았는데, 아니잖아.

간이귀화⁹⁾는 귀화국과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 등 일반적인 관계 이상의 애착 관계가 있을 때 일반귀화에서 요구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가 있는 이상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일반귀화의 경우보다 국적취득을 쉽

9)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게 허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 19>처럼 간이귀화의 방식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일반 귀화 시험으로 국적 취득을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체위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각 사례별로 국적 취득 유무를 물어 보고 간이귀화의 자격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한부모 다문화가족으로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실을 듣고 소요된 시간을 추정하여 간이귀화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이 미체류자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안정적인 체류권의 보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제 3 절 요약 및 정책쟁점

1. 다문화가족 실태 및 사례조사 요약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통해 전북지역의 이혼, 사별을 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가족적 특징, 경제적 수준 및 사회생활,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일반 다문화가족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정책요구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면서 실태조사와 연결된 실제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1)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전반적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연령층은 30-40대의 연령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었고 교육수준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 65%로 일반다문화가족 보다 높은 학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온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낮은 것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일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9.6%)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11.2%)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학력은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중학교 이하가 45.1%로 일반 다문화가족의 배우자 학력 가운데 중학교 이하가 28.6%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여 낮은 학력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를 보면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이혼의 경우 5-10년 미만인 37.1%, 사별은 10년 이상이 40%로 나타났다. 현재 유배우자가 있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이 5년 미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과 사별의 경우 5-10년 미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주거 및 경제 생활

다문화가족 유형별 주거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가 38.4%, 배우자 부모 소유가 34.3%, 다음으로 전세 또는 월세가 22.6%로 나타났고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49.2%가 전세 또는 월세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주거 소유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26.8%, 100-200만원 미만이 37.9%, 300만원 이상이 5%에 머물렀고 이에 비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이혼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65.9%, 사별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41%에 해당되어 일반 다문화가족 보다 가구소득 분포가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율을 보면 취업여부에 있어 현재 일하고 있다에 응답한 일반 다문화가족이 32.8%이었고,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이혼의 경우 52.9%, 사별은 56.1%로 나타나 일반 다문화가족 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취업비율에 있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가구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취업해 있다 하더라도 낮은 소득을 받는 직종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은 더 낮은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3) 해체 사유 및 생활의 어려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12년 실태조사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결혼생활 5년 미만 시기에 이혼, 사별하는 이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결혼생활이 5년 이상 되어 이혼, 사별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에는 2009년의 경우에도 초기 이혼, 사별보다는 5년-10년 미만 시기에 가족이 해체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이혼 사유는 2009년의 경우 성격차이 29.4%, 경제적 무능력 19%, 학대와 폭력 12.9%로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성격차이 48.1%, 경제적 무능력 20.7%, 학대와 폭력이 4.9%로 일반 가족들과 유사한 이유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2009년 당시 이혼의 사유로 성격차이가 21.4%에 머무르고 경제적 무능력 21.1%, 학대와 폭력 비율이

17.7%로 나타나 전국 단위와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혼 사유를 동일시 할 수 없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외로움, 언어문제, 자녀양육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서 이혼사례는 자녀양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사별의 경우는 낮은 임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으로써 자녀양육과 낮은 임금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더불어 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의논하는 대상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의논대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모국인과 한국인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한국인보다는 모국인을 통해 어려움을 의논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혜택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50%나 되었고 한국어 교육을 받아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상담 및 교육경험을 받지 못한 경우가 70.4%에 이르렀고 자녀양육 및 학습 도움에 있어서도 62.7%가 지원서비스의 혜택 경험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원서비스의 경험 부재를 통해 향후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해체된 가족의 경우 한국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보았을 때 건강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69.8%에 이르러 다른 사회보험들 보다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나 일반 다문화가족의 사회보험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 보다는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고용, 산재보험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가입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해체된 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부양자로서 취업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해체된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의료보호의 수혜율을 보면 국민기초 생활 보장지원이 27.3%였고 의료보호는 20.9%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현재 해체 다문화가족의 공공부조 수준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 수혜율은 11.7-27.7%로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전북의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기본적인 범주 안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4)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1) 결혼 과정 : 결혼의 환상, 잘못된 정보

이혼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 사례에서 20대 초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의 경로를 보면 중개업을 통해서 오거나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 또는 종교적 이유로 통일교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이주여성쉼터를 통해 소개 받은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한 사례 들은 대부분 중개업을 통한 결혼 경로를 보이고 있었다. 이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인 무분별한 중개업체의 난립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결혼이 진행되는 메커니즘 하에서 결혼에 대한 개인적 욕구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환상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중개업과 지인, 통일교 등의 경로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국제결혼 과정에 들어오게 된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중개업을 통한 결혼은 여성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남편의 성격·건강·학력·직업·경제력을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은 그 정도의 조건이면 결혼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 시기상으로 현재 소송중이거나 이혼을 한 유형들은 중개업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2000년대 중반 시기에 결혼한 유형들로 제도적으로 제제가 되지 않는 시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의 초기부터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다.

(2)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 그리고 이혼과정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나온 바와 다문화가족들은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인 64.4%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과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불안정성과 함께 배우자의 음주 문제, 그리고 폭력이 동반되면서 결혼 생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혼하거나 현재 이혼소송중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를 보면 결혼생활의

위기를 맞으면서 가출, 쉼터에 입소, 다시 가족으로 복귀, 다시 재가출하거나 쉼터를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대부분 결혼 초기에 임신한 한 사례들로 임신한 과정에서 언어적·물리적 폭력, 남편의 음주 문제,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출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폭력이나 배우자의 가출 중용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이나 경찰서에 연계되고 쉼터로 입소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현재 폭력이나 가출을 중용받고 이혼위기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위기지원체계로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들을 보면 폭력이나 배우자의 가출 중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이혼위기나 이혼소송 중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혼에 따른 일상생활, 가족관계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제공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기별로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닥친 불행 : 질병과 사고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다문화 사망자는 1,557명으로 전체 사망자인 257,503명의 0.6%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망자 중에는 남성이 1,154명이고 여성이 348명으로 남성 사망자의 비율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의 기본 연령차 9.5세를 고려해 보면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해체 과정을 거친 가족들은 향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의 사별 사례들도 질병과 사고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사례들에 있었다.

배우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등의 처리로 보상금을 받는 유형은 이후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댁과의 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시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시부모와 동거하지만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 등으로 갈등 상황을 겪고 있었다. 시댁식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기 보다는 일꾼,

보모 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남편이 사망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시댁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잡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시댁과의 관계,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확정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 계획을 세우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재혼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보다는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는 사례들이 나타나 다문화가족 유형의 다양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4) 이혼·사별 이후 삶의 고단함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은 주거 공간과 경제적 어려움이다. 앞서 실태조사에 나온 바와 같이 배우자가 있던 경우에도 경제적 취약 계층이었기에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한국의 한부모가족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원가족의 지지가 거의 없는 한국이기에 이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혼의 경우에는 당장 본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사별의 경우 배우자와 거주하던 곳이 안정적 거주지이면 머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나 시댁과 동거하던 중 갈등 상황이 나타나면 당장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혼자서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일과 자녀양육 양립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에는 체류권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① 주거문제

이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재 주거지에 대한 문의에서 20개 사례 중 5개 사례는 쉼터에 머물고 있었으며 일터의 숙소나 여관방을 이용하는 사례가 3개 사례, 월세 형태로 사는 경우가 7개 사례, 사별의 사례는 시댁거처 2개 사례, 모자원 1개 사례, 자가 2개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했거나 일반적으로 가출을 중용 당하여 이혼소송에 있는 사례들은 쉼터나 일시거처에 머물렀고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사례들도 낮은 임금으로 월세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②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도 나온 바와 같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특히 이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결혼초기부터 경제적으로 열악한 배우자에 따라 힘든 삶을 꾸렸지만 배우자의 부재는 이들을 더욱 빈곤한 상황으로 몰리게 한다.

20개의 사례 중 이혼이 완료된 사례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격 확보를 얻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지만 수급요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수급액이 삭감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¹⁰⁾.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매우 긴요한 자원인 기초생활 수급의 유지는 한편으로 이들에게 적극적인 취업 욕구와 자립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딜레마로 작동되고 있었다.

③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의 어려움

해체된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부딪히는 문제가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교육시켜 줄 수 있는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전적으로 보육기관이나 방과 후 돌봄기관을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④ 체류권의 문제

이혼이나 사별의 과정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은 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이다. 자녀가 없고 이혼소송중인 국적 미취득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재판이혼 소송을 하여 이혼의 귀책사유를 배우자에 몰아 체류자격을 받고자 하였고 국적 미취득 상황에서 이혼하여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면 미체류자로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

10) 현재 해체 다문화가족의 공공부조 수준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 수혜율은 11.7~27.7%로 상당히 저조하여서 다수가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추정된다.

교섭권을 갖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사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적을 미취득한 상황에서 일반귀화 시험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 물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2.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 쟁점

이혼, 사별을 통해 해체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사례를 통해 제기되는 지원 정책은 우선적으로 국제결혼의 구조적 메커니즘 하에서 혼인단계에서부터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 차원의 정책개입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어진다. 현재 이와 같은 정책은 중앙단위의 정책에서 혼인의 진정성 확인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 강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단위에서는 현재 지역 사회에서 이혼·사별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혼위기나 이혼 조정을 하고 있는 해체위기 가족 및 해체된 가족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여겨진다.

1) 주거·경제·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필요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지원

이혼 및 사별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관한 지원정책은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이 핵심 사안이다. 특히 실태나 생활실태조사에도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자녀양육, 주거 공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무엇보다 이것을 해결하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및 사별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관련된 기존 정책들의 경우, 부분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지원정책의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부부간의 갈등 등으로 가출을 하여 자녀

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 쉼터나 일시보호시설은 일시적인 주거 공간과 생활지원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자립을 위한 경제적 활동이 제약되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이혼, 사별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자녀양육을 돕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지원해 주는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브릿지 센터의 역할을 하는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와 자립기반 확보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언어문제, 취업능력의 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주고 자녀양육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브릿지 센터의 지원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주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2010년에 개소한 서울이주여성디딤터가 이주여성의 자립자활지원센터 기능을 하면서 위와 같은 브릿지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디딤터는 폭력피해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대상만을 지원해 주고 있기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혼을 통한 다문화가족 해체 비율이 높고 이혼의 사유가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이 동시에 수반되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가장 취약한 대상은 위기다문화가족이므로 이들에 대한 일차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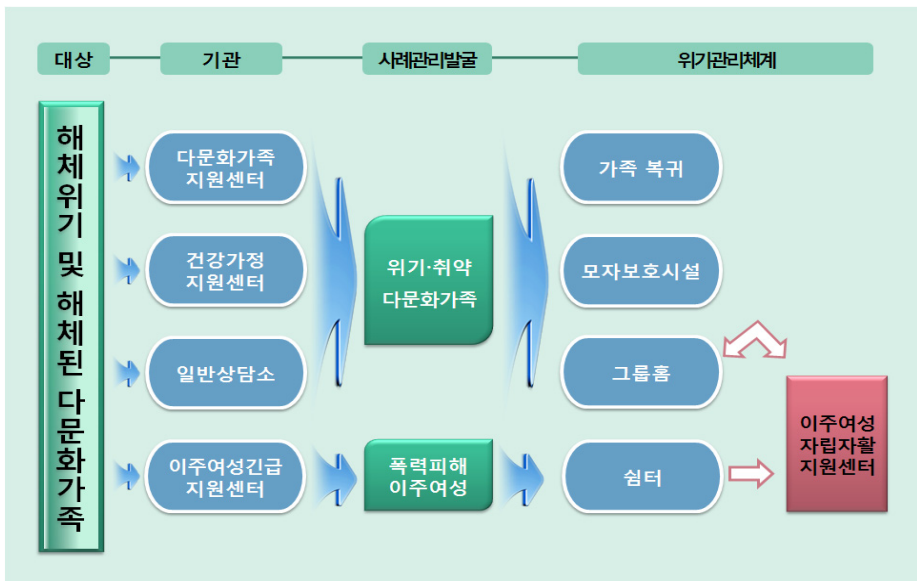
따라서 향후 전북지역의 경우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중 가정 폭력피해를 통해 쉼터에 머무른 가족 중에서 이후 자립자활을 위한 기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브릿지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대책인 것으로 여겨진다.

2)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 요구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제2차 다문화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이전 정책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들이 중심이 되어 가족해체와 관련한 예방정책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에는 관심이 소홀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세 속에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족해체 예방정책이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실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변화에 부응하는 지원 서비스보다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는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이혼위기나 이혼, 사별한 다문화가족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2〉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 위기관리 체계



한편 현재 지역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상담기관 등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들은 지역사회의 위기 상태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가 정비되는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체위기를 맞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해체 위기를 극복하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해결은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위기 관리 체계들인 기존 인프라 시설들의 역할 강화와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 4장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제 1 절 정책방안

제 2 절 추진과제

제 4 장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제 1 절 정책방안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거주기간의 장기화, 다문화가족의 해체 현상, 다문화가족 지원의 대상별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¹¹⁾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해체 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과 건강성 제고를 위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다문화가족보다 해체 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배우자를 통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서 이들이 지닌 인적·사회적 자원과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지역사회 취약 위기 계층으로 쉽게 전략할 수 있다. 따라서 해체 다문화가족이 가족으로서 자녀돌봄과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행복의 새 시대를 여는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전략과 함께 국정과제로 제시되는 자립지원 복지체계와 연동되는 정책지원으로 특히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혼·사별 등 해체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기존 인프라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존 인프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센터, 이주여성 그룹홈 등이 존재한다. 전국적 단위의 인프라는 2013년 현재 다문화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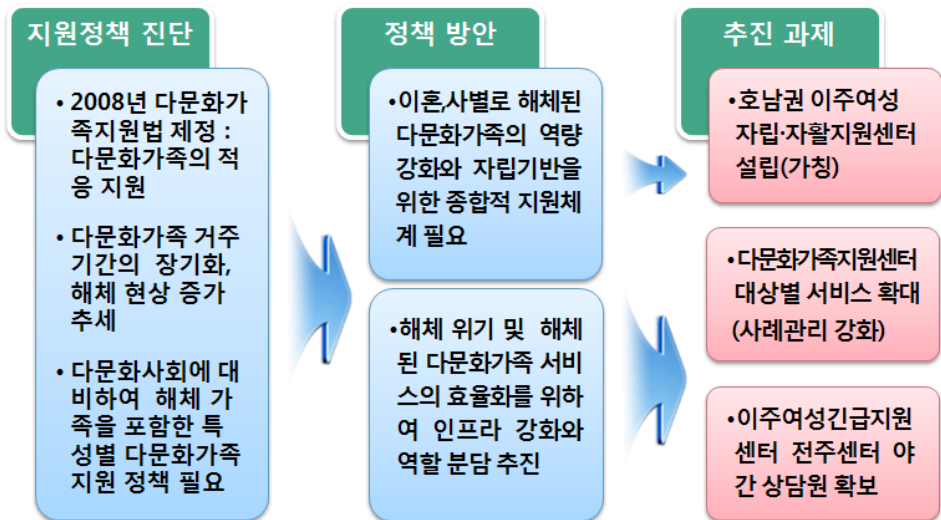
11) 사회적 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의미한다.

지원센터가 212개소 있기에 이들의 기능과 역할 안에 해체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은 현재 다문화가족의 초기생활 적응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지원 방식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해체위기의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24시간 Hot Line 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문화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과 폭력 등이 이혼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중 많은 여성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10% 정도만 신고하고 있고 이들이 폭력을 당할 때 가족이외에 쉼터나 가정폭력상담소(16.7%), 이주여성긴급전화(12.5%)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 인프라를 통해 해체위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림 4-1〉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제 2 절 정책 추진과제

1. 호남권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가칭) 설립방안

1) 필요성

□ 호남지역 이주여성 해체 증가

다문화 이혼 건수는 2009년 13,653건에서 2011년 14,450건으로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서울(16.0%), 전남(13.7%) 다음으로 전북(13.1%)이 전국에서 세 번째의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북과 전남 지역 이주여성 이혼율이 전국대비 단순 합계율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를 포함할 경우 호남지역의 이주여성 이혼율은 36.5%로 나타나 해체된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인다.

전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 현황(2011년)을 보면 부부갈등(21.4%), 생활(19.4%), 이혼문제(13.0%), 폭력(11.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이혼상담의 경우 부부갈등이 3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이 28.3%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전북지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 현황의 경우에도 부부갈등(35.9%), 가족갈등(12.9%), 가정폭력(10.9%)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다문화 해체가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갈등이 폭력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 해체가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김재민·장명선, 2012).

□ 지속가능한 맞춤형 자립·자활 기반 필요

부부갈등 및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이주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쉼터는 호남 지역에 4개소(전북 2개, 전남 1개, 광주1개)가 있다. 그러나 쉼터는 일시 보호시설로 최대 2년 이상을 거주할 수 없고, 더불어 입소기간과 관계없이 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바로 퇴소하게 되어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 및 자립 기능을 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 노출된다. 또한 쉼터는 직업훈련을 시

킬 수 없고, 동반 아동의 보육 문제,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없어 현재의 쉼터 기능으로 호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문화 해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부 갈등과 폭력을 피해 원가족으로부터 나온 이주여성의 심리적·정신적 치유와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치인 자립·자활지원센터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맞물려 필요하며, 기존 쉼터와 자립·자활지원센터의 차이점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이주여성 쉼터와 자활지원센터의 비교

구분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입소대상 및 목적	가족폭력피해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일시 보호	위험요소가 해소된 외국인 거주 및 자활지원
거주지	비공개	공개
주요기능	생계지원(식비, 교통비, 전화카드비 지원), 의료, 법률, 출국지원	생계지원(식비, 교통비, 전화카드비 지원), 의료, 법률지원, 보육지원, 직업훈련지원, 공동작업실 운영, 취창업연계지원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2009).

한편 이주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자립·자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이주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취업연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이주여성을 지원해 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의 차별성을 찾기 위하여 지역이 원하고 있는 일자리 수요와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주여성의 적성을 판단한 후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연계를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수요와 기업 및 지역사회 수요조사 등을 병행하여 전략 직업군을 파악하고 직업 교육 영역을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이나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인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정 정도 보호된 취업 시장을 형성해 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정적 거주와 자녀양육 지원 필요

폭력피해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이주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고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거주 공간이 없고 자녀를 동반할 경우 심각한 빈곤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언어 문제나 사회적 편견, 직업 기술 능력의 부족, 취업 정보 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해주는 자립·자활지원센터는 우선적으로 거주 공간 제공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제공하여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고 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입소대상의 명확한 기준 적용 필요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자립 및 자활을 위해서는 입소 대상의 명확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이주여성의 자립·자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입소대상의 선발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적용이 요구된다. 현재 서울시 이주여성 자립·자활센터의 입소대상은 합법적 국내체류가 가능하며 입소를 희망하고 동의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 자활의지가 강하고,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어 국내 체류가 가능한 자와 이혼소송 중 기관장의 의뢰를 받은 자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할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전념할 수 없어 자립·자활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자립·자활센터의 경우 입소대상자를 법률적으로 해결된 대상자로 한정하고 맞춤형 직업교육프로그램과 생활지원, 기본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2010년에 개소한 서울이주여성디딤터가 이주여성의 자립·자활지원센터로의 역할을 하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대상을 지원해 주고 있기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이혼을 통한 다문화가족 해체 비율이 높고 이혼의 사유로 경제적 무능력

과 폭력이 동시에 수반되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기다문화가족의 대상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일차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호남권역의 이주여성자립·자활지원센터의 입소 대상은 결혼생활 중 부부갈등과 함께 폭력 피해를 받은 이주여성과 그 자녀이며 법률적으로 이혼의 문제가 해결된 대상자로 한정하여 맞춤형 직업교육프로그램과 생활지원, 기본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전북 지역의 호남권역 자립자활기관센터 설립 근거

부부갈등이나 가정폭력 등을 통해 가족이 해체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인적 자원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한국여성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때문에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이제까지 생활한 공간적 범위 내에 남아서 취업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전북, 전남, 광주 등 다문화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주여성자립·자활센터의 건립은 지역차원에서 발생하는 이주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호남지역의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자활지원센터를 전라북도에 건립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호남권역에서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기존 인프라 구성도가 높고, 행정지원체계에서 다른 시도와 달리 광역 단위에서 다문화교류과를 두어 다문화 관련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모델 개발로 차별화된 자립·자활 모델을 실행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주여성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면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전라북도는 지역적으로 U-turn 기업유치를 통해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기에 지역기업과 관련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이주여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표 4-2〉 전라북도의 설립근거

구 분	전 북
입지적 요소	수도권과의 거리적 잇점 충청권역까지 관리
시설의 집적화	다문화관련 시설 밀집 (14개 센터, 쉼터 2곳, 거점센터 1, 이주여성관련 상담소 3개)
행정지원 체계	다문화교류과 (도차원의 독자적 지원 사업 추진)
지역형 자립자활모델	광역자활기관(다문화 사업 추진) 다문화관련 협동조합 2개
일자리 창출 연계	U-turn 기업유치 관련 제조업 일자리 (익산 보석제공 관련 이주여성 직업교육 실시)

따라서 전북을 중심으로 호남권역의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차별화된 모델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권역별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사례-서울 이주여성 디딤터

□ 개요 및 현황

- 목적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제공, 아동보호, 직업훈련 등 자활 지원을 수행
- 입소현황 : 2013년 1월 기준, 16가족 36명(이주여성 16명, 동반자녀 20명)
 - 국적별현황 : 중국(2), 베트남(8), 네팔(1), 필리핀(3), 캄보디아(1), 몽골(1)
 - 자녀 현황 : 0세(4), 1-2세(4), 3-4세(5), 5-6세(3), 7세 이상(4)

정원(명)	거주자	동반자녀	계(명)	비율(%)
40(현 16가족)	16	20	36	90.0

- 직원현황 : 9명

계(명)	원장	사무국장	자활지원	상담생활지원	보육교사	행정회계	시설관리
9명	1	1	2	2	1	1	1

□ 기능 및 사업

- 기능 : 이주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및 취창업 알선
 -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생활문화교육, 직업교육 등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동반 자녀의 육아 및 보육지원

- 주요사업
 - 대상자 사례관리
 - 생활지원사업 : 입소초기, 입소중기, 퇴소예정자 3단계로 구분 지원
 - 기본교육사업 : 한국어, 컴퓨터활용교육, 문화이해교육, 취업준비교육
 - 직업훈련사업 : 바리스타, 봉제, 한식양식조리, 제과제빵과정 등
 - 동반자녀지원사업 : 보육지원실, 지역사회어린이집, 부모교육, 놀이교육 등
 - LH 공사 임대주택 : 자립 정착금 500만원 지원
 - 이주여성 지원 : 시설수급지원 1인당 15만원,
정규프로그램 80% 출석 시 20만원 별도 지급

- 운영비 : 연8억(국비 50%, 지방비 50%)

□ 시설현황

- 규모 : 총 면적 990㎡ 지하1층, 지상3층
- 시설내용 : 생활실, 육아실, 도서실, 상담실, 어학실, 공동작업장 등
- 소요예산 : 1,950백만원(국비 1,040백만원 : 지방비 910백만원)
- 운영방식 : 민간위탁방식(살레시오수녀회 수탁자 선정)

〈그림 4-2〉 서울시 이주여성 디딤터 조감도



□ 서울이주여성 디딤터 운영에 대한 평가

· 자립자활기관으로서 입소 대상의 적정성

서울시 이주여성 자립자활센터의 입소대상은 합법적 국내체류가 가능하며 입소를 희망하고 동의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 자활의지가 강하고,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어 국내 체류가 가능한 자와 이혼소송 중 기관장의 의뢰를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할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전념할 수 없어 자립·자활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운영 프로그램의 차별성 부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존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과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이며,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취업희망자와 취업관련기관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년간의 직업 훈련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결과를 창출하였다. 2012년에 첫 퇴소자를 배출하였는데, 퇴소자 7명 가운데 6명이 취업하였으나 요리사 1명, 미싱사 3명, 룸메이드 1명, 세탁업 옷마무리 담당 1명으로 비교적 단순노동에 취업하는 결과를 낳았다.

· 운영 주체

현재 서울이주여성디딤터의 경우 민간위탁방식으로 살레시오 수녀회가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피해이주여성의 생활시설 및 자립기능, 보육기능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전문적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행정 보다는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를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녀회가 갖고 있는 종교적 특성, 이주여성 특성에 적합한 기업 연계,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여건으로 단편적인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운영 방식과 관리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기존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인프라의 운영 주체들이 겪는 문제로 여겨지며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호남권 이주여성 자립·자활센터 운영방안

(1) 운영방향

□ 자립·자활 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체제 구축

호남권역의 자립·자활센터는 지역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소한 이주여성의 초기 상태에서 필요한 수요 및 적성 등을 진단하고 기업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적합 직종을 개발, 숙련도 및 다양한 욕구수준 등을 고려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응 및 심리치료, 언어교육 등 기본적인 소양 교육 등을 병행하여 자립능력을 확대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가족 친화적 생활거점으로서 운영

호남지역의 폭력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자활센터는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들에게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따뜻한 가정 기능을 부여하는 생활공간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밀착형 운영

호남지역 자립·자활센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들의 생활 및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자립·자활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기관들과 연계되어 운영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점을 해체된 한부모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이 방안은 현재 생활시설인 이주여성자립·자활지원센터를 폭력피해이주여성과 자녀를 위한 생활공간과 함께 직업교육시설과 공동작업장은 지역의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4-3〉 이주여성 자립자활센터의 주요 기능

호남권 이주여성 자립자활센터 주요 기능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사회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
- 취업관련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지도
-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취업연계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지원
-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 소양교육(언어, 사회적응, 정보화 등)
○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주거 및 자녀양육 지원

(2) 운영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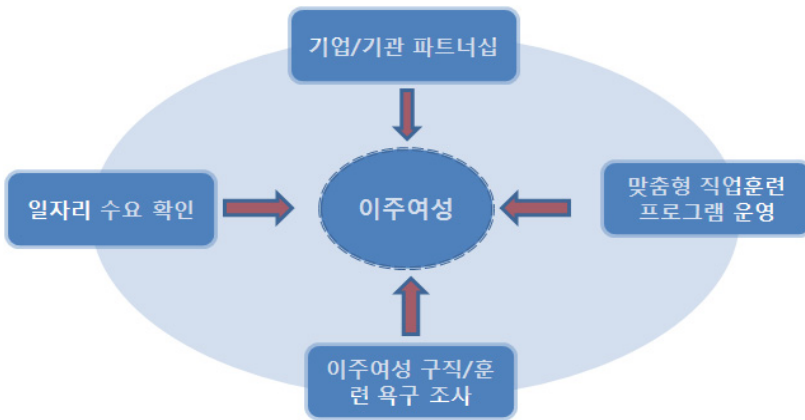
①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그 동안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은 훈련기회 제공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인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 일자리 수요 및 구직욕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조합을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은 첫째, 이주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에 앞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 욕구, 그리고 직무능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훈련 욕구를 증진하도록 하고, 이주여성들이 자립 및 자활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훈련에 소극적인 경우 성과 달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4-3〉 이주여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틀



둘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 가능성이 있도록 지역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한 고용센터나 취업연계 기관과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자활 촉진 및 자립·자활의 성공 추진을 위한 전문직종 및 직업 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되어야 한다. 이주여성들이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및 취업연계할 수 있도록 직업숙련특성 및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 직종을 발굴하고 관련기관의 연계를 위한 체계적·전문적 지원서비스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 즉 맞춤형 훈련 형태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 이주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 성공은 숙련수요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어떻게 대응방안을 잘 마련하는 지에 달려 있다.

② 동반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피해이주여성들의 동반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보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언어지체를 예방하기 위한 언어발달 교육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동반 자녀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를 개선하고, 아동들의 심리 및 건강상태 등을 관찰하여 음악치료, 미술치료,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관리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사회적응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생활문화, 경제생활, 사회생활,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외에도 음악치료, 미술치료,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④ 취업연계를 통한 공동작업장 운영

이주여성들에게 자립 및 자활 촉진을 위해 취업 연계를 통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일정한 경제적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들의 지속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직업 취득이 중요하며, 인터뷰 이전 단계에 공동작업장의 운영을 통해 사전적 취업 활동을 시작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운영안도 마련해야 한다.

(3) 운영주체

호남권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 운영주체의 유형은 직영 형태와 민간위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의 직영형태는 시설 구축 및 운영에 있어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안정화 및 운

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성격 및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친 규정과 원칙 중심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이주여성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직영형태의 경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성격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채용하고 취업 및 일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달할 전문 계약직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지원 업무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 등을 배치하여 운영하면 효과적으로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형태는 이주여성 관련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다. 민간위탁은 피해 이주여성의 생활시설 및 자립기능, 보육기능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전문적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행정 보다는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를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을 특성에 적합한 기업 연계가 어렵고,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이 어려워 단편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호남권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가 지역 수요 대응을 위해 설립될 경우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여야 하고, 단기간 및 일시적인 시설이 아니고 지속적이면서 이주여성의 권익 및 심리치료,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착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전제될 수 있는 직영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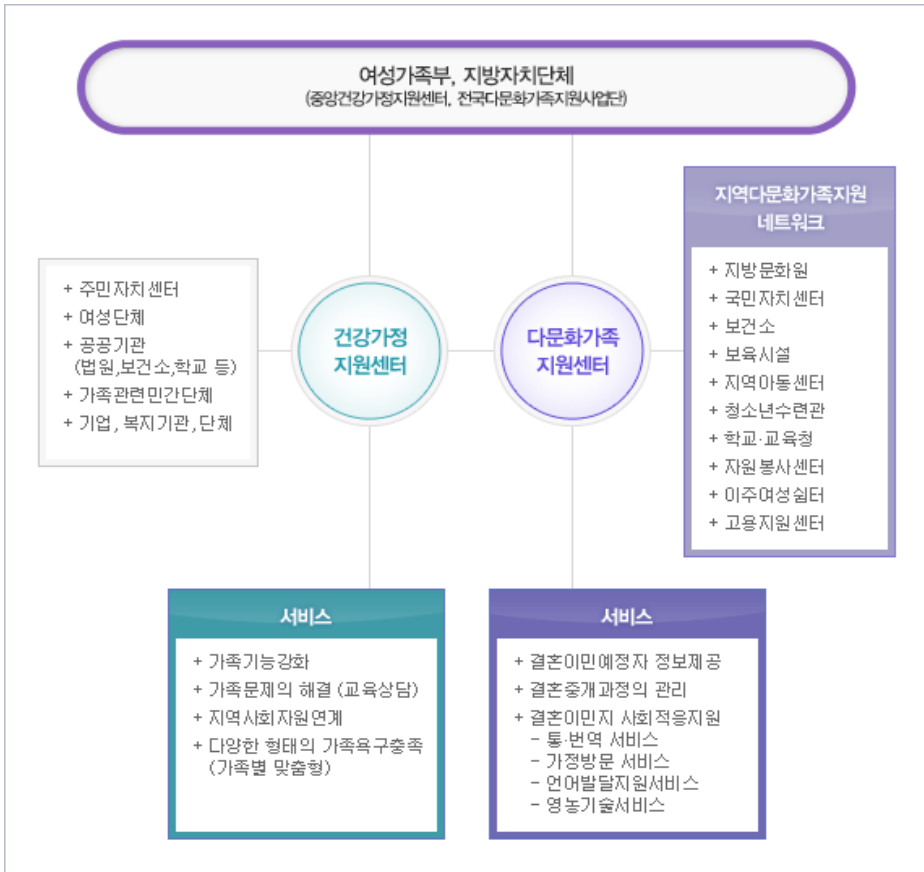
〈표 4-4〉 호남권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의 운영주체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비고
지자체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안정화 및 지속화에 기여 • 성과도출 가능 •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법을 적용 운영에 효율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이주여성에 대한 심리적 이해 및 공감 부족 • 이주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마인드 접근 부족 및 경영의 지속성 부족 	
민간위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이주여성의 이해 및 자활지향 형성에 긍정적 • 이주여성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취·창업 연계네트워크 구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지원체계가 떨어짐 • 설립주체와 운영관리에 있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 형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해체위기 및 해체된 가족의 서비스 지원 확충

현재 가족과 관련된 가족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 단위의 연결 하에 각 센터의 상호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 있다.

〈그림 4-4〉 가족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1) 현황 및 필요성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는 가족

의 안정적 초기 정착 및 지원, 그리고 자녀양육과 교육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일반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변화 내용에 맞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해체 위기 및 한부모 결혼 이민자가족 등을 위한 서비스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분석해 보면 다문화가족 초기생활 적응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①초기입국자 대상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②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③상담, 다문화가족사례관리 ④방문교육, 자조모임 ⑤취업소양교육, 취업연계사후관리 ⑤자녀성장지원, 정보제공 ⑥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해체위기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국제결혼전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상황이다.

2)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역할 강화

(1) 상담 현황 및 문제점

해체위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혼 및 사별과정에서 해체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상담,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가족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업무 맡은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센터라도 센터별 상황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상담공간의 배치도 센터마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2)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역할과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업무의 독립성과 업무분장을 센터장의 역할로 실현되도록 하며 지원센터 마다 상담실의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슈퍼바이저 형태의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함께 현재 국비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의 시범운영(전국 단위의 50명)이 2014년에 100명으로 확대되는 계획 하에 전라북도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문화마을학당을 통한 사례관리 운영

전라북도 차원에서 201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마을학당은 전북형 사례관리의 모형으로 해체위기가 해체된 다문화가족지원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다문화마을학당의 사업목적은 민간 부문의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각종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따라서 다문화마을학당은 각 지역별로 이혼, 사별 이후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의 사회취약계층이 자립·자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는 전북형 사례관리의 모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안과 운영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전주센터의 운영 개선

1) 현황 및 필요성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피해, 가족 간의 갈등해결,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등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지원체계가 요구되면서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현재 해체위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초기 대응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365일 24시간 Hot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위기개입 상담(내방, 출장, 전화상담), 긴급구호서비스, 법률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통번역서비스 등

다각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의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사전교육(Pre-Departure Program)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정폭력, 가족학대, 차별 등 문제발생시 '1577-1366'을 대표적인 상담번호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1577-1366'은 자국에서부터 가정폭력 및 긴급상황의 위기시 콜번호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현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6개가 위치해 있으며 13개 언어 85명의 상담원을 배치해 두고 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에 비하여 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중앙단위에서 이와 유사한 상담콜센터인 다누리 콜센터와의 업무 중복성과 지역센터의 야간상담이 중앙센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2) 개선 방안

□ 중앙의 '24시간 Hotline 콜센터' 1577-1366와 다누리 콜센터 통합

(1) 현황 및 문제점

이주여성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생활정보 안내 및 연계서비스'를 주기능으로 하는 '다누리콜센터'는 설립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 지원 '상담콜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부분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업무의 중복 기능이 문제되고 있다.

다누리콜센터의 2012년 상담 유형을 보면 한국 생활 적응 및 다문화정보 문의가 7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역이 17.6%, 다문화가족 갈등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유형을 보면 갈등상담 1.4%, 이혼 13%, 폭력 11.7%, 체류문제 11.4%, 생활상담 19.4%, 가출 2.8.% 등 유형별 다양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생활상담의 비율이 높아 상담의 중복성을 가지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이 좀 더 다양한 상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다누리 콜센터의 상담유형(2012)

구분	계	한국생활적응 및 다문화정보 문의						통역	다문화가족 갈등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관련	자녀 관련	취업 및 노동	체류 및 국적	기타 정보		폭력 등 긴급	부부 갈등	기타가족 갈등	기타
건수	21,525	1,697	7,485	1,401	816	1,645	3,298	3,780	179	1,013	193	18
비율(%)	100.0	7.9	34.8	6.5	3.8	7.6	15.3	17.6	0.8	4.7	0.9	0.1

〈표 4-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상담유형(2012)

구분	계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갈등	가출	심리정서	외도	이혼문제	일반법률	체류문제	노동	생활	의료	심터	기타
건수	80,849	8,417	447	507	31	13,044	4,125	2,265	1,107	335	10,539	2,986	9,195	2,221	15,660	3,347	4,408	2,215
비율(%)	100.0	10.5	0.6	0.6	0.11	16.2	5.2	2.8	1.4	0.4	13.0	3.7	11.4	2.7	19.4	4.1	5.5	2.7

한편 상담지원 결과에 있어서도 다누리콜센터는 직접지원상담은 심리정서지원 상담이 2.1%, 그 외는 기관 직접 연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7%, 전문기관과 관련정보제공 50.3%로 관련 전문기관 정보제공으로 한국생활 적응과 다문화관련 전문기관 및 관련 정보제공에 서비스 제공의 전체 81.2%를 차지하였다.

〈표 4-7〉 다누리콜의 부문별 제공현황

구분	계	전문기관 정보제공						관련정보제공		통역	상담	기타			해피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법률기관	출입국관리소	노동기관	기타	법률정보	생활정보			통역	3자통역	심리정서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지원센터
건수	23,977	7,460	536	618	218	260	2,971	501	6,907	2,747	608	496	288	72	62	233	
비율(%)	100.0	50.3						30.9		14.0		2.1		1.7			1.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87.6%가 직접상담이며, 전문기관 및 타기관 연계는 5%정도에 머물러 상담의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센터를 가지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위급 상황에 대한 지원 방식이 더 확대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표 4-8〉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부문별 제공 현황

구분	계	보호 시설	전문 상담 기관	법률 기관	의료 기관	노동 기관	출입국 관리소	수사 기관	기타 기관	현장출동 협조요청	직접 상담	2차 상담 권고	기타
건수	66,890	430	1,605	364	182	166	204	184	152	126	58,588	4,646	243
비율(%)	100	0.4	2.4	0.5	0.3	0.3	0.3	0.3	0.2	0.2	87.6	7.0	0.4

(2) 개선방안

현재 다누리콜센터가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들에게 생활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되어 114의 역할을 한다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위기지원 상담 역할 기능으로 119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이 전화를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에 치우친 경향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통합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지역센터의 역할이 이주여성의 긴급지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지역센터가 없는 다누리콜센터와의 상담과 서비스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콜센터의 기능을 가지면서 중복사업을 줄이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중앙의 다누리콜과 1577-1366의 통합은 필요하다. 현재 2014년 여성가족부의 사업계획안에 들어 있는 다누리콜센터의 예산확보와 함께 중복사업인 1577-1366과의 통합은 사업의 효율성과 기능성 차원에서의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 1577-1366 지역센터 야간상담원 배치(시범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24시간 Hotline 콜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역센터의 경우 야간상담은 중앙센터로 연결되고 있기에 가정폭력이나 다문화가족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지역별 이용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있어서 부산, 전북의 순으로 기존 지역센터가 있는 곳의 비율이 높았다.

〈표 4-9〉 중앙과 지역센터의 이용비율(2012)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제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본국	기타
비율 (%)	100.0	13.8	18.6	3.5	1.6	2.3	4.7	4.9	0.7	3.3	7.2	5.2	1.5	8.4	8.3	5.2	4.2	1.1	5.5

한편 시간대별 상담특징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담이 증가하였으며 야간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지역 센터들과 다누리콜센터가 착신하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상담은 20.2% 증가하였으며, 야간상담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69.4% 증가하여,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4-10〉 시간대별 상담 통계(2012)

구분	계	08:00-12:00	12:00-18:00	18:00-22:00	22:00-24:00	24:00-08:00
건	66,890	19,701	30,733	10,174	3,392	2,890
비율(%)	100.0	29.45	45.95	15.21	5.07	4.32

그러나 지역센터의 경우 야간 상담은 중앙으로 연결되어 6시 이후 수행하는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직접 상담에 집중되어 있고, 위기 가족의 문제가 당면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하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 센터 인원을 보강하여 야간 상담원을 배치하는 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현재 긴급피난처의 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2년 긴급피난처 입소자는 638명(성인 434명, 동반아동 204명)으로 2011년 입소자 305명 비교하면 긴급피난처 이용율이 109.2%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센터의 141명을 제외한 지역센터의 이용자도 497명으로 증가율과 비례하여 지역센터의 인력을 보강하여 ‘일시보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긴급피난처 입소자 퇴소 결과는 보호시설 연계가 4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상담을 통한 귀가 28.4%, 친·인척 연계 9.9%, 자국으로의 귀국 7.8%로 나타났다.

(2) 개선방안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지역센터 야간상담이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역센터의 역할로 전환하여 지역 24시간 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긴급피난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간상담원의 배치와 긴급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의 확대가 정리될 수 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지역센터는 전체 운영비가 여성가족부가 중앙의 국비로 지원해 주는 1억5천2백만원과 도비 지원금 2천5백만원으로 인건비는 중앙의 국비로 운영되기에 야간상담원 배치는 국비의 지원금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전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예산 확대의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지역별 이용 현황을 비교하여 이용율이 높은 곳을 시범적으로 배치해 운영하는 안을 마련한다. 현재 지역센터의 이용율은 부산, 전북, 전남의 순이므로 이 지역의 우선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 곽배희(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두년 외(2010),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여성가족부
- 김두년 외(2012),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 여성가족부
- 김두섭 외(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pp25-56
-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2), 취약위기 및 한부모가족지원체계 구축고가 자립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 김유경 외(201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 외(2005),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고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 외(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김재엽 외(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지영 외(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경연(2010),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박미정(2011),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정예리(2011), 해체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삶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박재규(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17(2), pp 75-105
- 박재규(2011), 국제결혼여성 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보건사회연구 31(3), pp104-139
- 박진근(2010),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해체 시 친권자결정,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설동훈 외(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애인구 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2년도 시행계획 _____(2013),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이명신(2006), 여성의 잠재적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황과 복지, 22, pp207-266
- 이정희(2006), 여성결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 연구, 계명대 석사 학위논문
- 장명선(2009),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 조경옥 외(2010),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홍미희 외(2011), 인천지역 다문화가족 해체현황과 정책방향, 인천발전연구원
- 통계청(2011), 2011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_____(2011), 2011년 혼인·이혼통계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전발연 2013-PR-0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발행인 | 김 경 섭

발행일 | 2013년 7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번지
(효자동3가 1052-1)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079-6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